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988호 2025년 12월 1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도지정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0호) 6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단밀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1호) 8
- 수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2호) 10
-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3호) 12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4호) 15

■ 공 고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07호) 18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08호) 19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09호) 20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15호) 21
- 국가유산수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17호) 24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18호) 25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28호) 26
-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30호) 85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류 검단4호선 및 검단5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5-245호) 168
- 경주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고시 제 2025-246호) 178
-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5-305호) 193
- 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200호) 199
-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5-250호) 201
-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5-256호) 203
-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신학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5-156호) 211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5-164호) 215

■ 공 고

-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5-1614호) 221
-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열람 공고
(봉화군 공고 제2025-1377호) 226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4호) 230
-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8호) 231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80호) 232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89호) 233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90호) 234

■ 공 고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공고
(포항남부방서 공고 포남 제2025-1호) 236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0호

도지정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하고 도보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정해제내용

지정종별	국가유산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자	해제사유 (승격일자)	비고
민속 문화유산 제36호	안동 전주류씨 삼산종택	1과	류기태	경북 안동시 예안면 기사길 42	1982.12.01.	국가민속 문화유산 승격 (2025.8.21.)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유형 문화유산 제455호	안동 광흥사 응진전	1동	대한불교 조계종 광흥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광흥사길 105	2012.10.22.	보물 승격 (2025.11.3.)	안동 광흥사 응진전
민속 문화유산 제134호	예천 삼강주막	1동	예천군	경북 예천군 삼강리길 27	2005.12.26.	국가민속 문화유산 승격 (2025.11.27.)	예천 삼강나루 주막

2. 지정해제사유

-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합니다.

3. 해제일자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 전 화 : 054-880-3168 (FAX 054-880-3179)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1호

단밀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밀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변경없음) : 노후화된 용·배수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변경)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비안면, 구천면, 구미시 도개면 일원
- 수혜면적 : 2,028ha
- 사업개요
 - (당초) 용·배수로 12조 L=11,759m
 - (변경) 용·배수로 12조 L=11,905m

3. 사업비소요액(변경없음) : 5,448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변경) : (당초) 2022. ~ 2025. 12. 31.

(변경) 2022. ~ 2027. 12. 31.

5. 사업효과(변경없음) :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시설물안정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7. 기타(변경없음)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054-830-814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2호

수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일원
- 수혜면적 : 120.6ha
- 사업개요
 - 물넘이 보수·보강 L=38.9m

- 여방수로 보수·보강 L=112.7m
- 사전방류시설(BxH=1.9×1.9m) 설치

3. 사업비소요액 : 1,925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5.11. ~ 2028. 12. 31.

5. 사업효과 :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시설물 안정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4)
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3호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37-2번지 일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기 명확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60,712,538.1	-	660,712,538.1	100.00	
주거 지역	소 계	5,890,777.2	-	5,890,777.2	0.89	
	일반주거지역	5,231,235.5	-	5,231,235.5	0.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785,715.6	-	1,785,715.6	0.27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0,763.6	-	2,380,763.6	0.36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4,756.3	-	1,064,756.3	0.16	
	준주거지역	659,541.7	-	659,541.7	0.10	
상업 지역	소 계	837,639.2	-	837,639.2	0.13	
	일반상업지역	736,972.6	-	736,972.6	0.11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0.02	
공업 지역	소 계	431,563.6	-	431,563.6	0.06	
	일반공업지역	156,562.6	-	156,562.6	0.02	
	준공업지역	275,001.0	-	275,001.0	0.04	
녹지 지역	소 계	9,431,869.4	-	9,431,869.4	1.43	
	생산녹지지역	347,720.0	-	347,720.0	0.05	
	자연녹지지역	9,084,149.4	-	9,084,149.4	1.38	
관리 지역	소 계	319,731,128.0	증) 3,604	319,734,732.0	48.39	
	보전관리지역	134,735,117.3	-	134,735,117.3	20.39	
	생산관리지역	49,921,777.0	-	49,921,777.0	7.56	
	계획관리지역	135,074,233.7	증) 3,604	135,077,837.7	20.44	
농림지역		323,801,560.7	감) 3,604	323,797,956.7	49.01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0	-	588,000.0	0.09	

※ 기정 면적은 경상북도 고시 제2025-153호(2025. 4. 24.) 및 예천군 고시 제2025-38호(2025. 3. 31)(예천 제3농공단지계획 정정고시)를 반영한 기준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604	-	3,604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3,604	3,604	100.0	
농림지역	3,604	감) 3,604	-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예천읍 석정리 37-2번지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604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에 따른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공청사(산불방지 대응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관리지역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 등은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464호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서본공원 조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서본 공원	근린 공원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64,974	감) 15,185	49,789	건고 제713호 (1967.12.26.)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서본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변경 ◦ A = 64,974㎡ → 49,789㎡ (감 15,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공원(근린공원)으로써 여가·휴식·문화 기능의 공간을 제공하고,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원 구역계정형화 및 조성계획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 등은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07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도(제31호)	노 선 명	부산~신고산선
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설치		
구 간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62-3번지 일원(진안사거리)		
공사시행장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진보면 소재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착 수 일	2024년 12월 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25년 11월 30일 변경) 2026년 6월 30일
변경사유 : 관계기관 협의 및 후속공종 추진 지연에 따른 연장			
※ 관련 공고 - 제2024-2251호('24.12.5.), 제2025-962('25.5.8.)호, 제2025-1952(25.9.22)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08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양북~구룡포선 (지방도929호선)
공사의 종류	교차로 설치		
공 사 구 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133-4번지 일원		
시 행 장 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도929호선 연결 교차로 설치		
착 수 일	2025년 6월 18일	준공예정일	(당초) 2025년 11월 28일 (변경) 2026년 4월 30일
변경사유 :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공사 추진 지연에 따른 연장			
※ 관련 공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5-1385(2025.6.23.)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09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도	노 선 명	광양~양양선 (국도59호)
공사의 종류	회전교차로 설치		
공 사 구 간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63-1 일원		
시 행 장 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감포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따른 연결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착 수 일	2024년 4월 25일	준공예정일	당초) 2025년 5월 25일 변경) 2026년 4월 30일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관련 공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4-963(2024.04.25.)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1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명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법적근거
(주)경록 (김경찬)	건축공사업 (16-1027)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928-1, 201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	시정명령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KISCON) 및 경상북도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최종기한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17호

국가유산수리업자 행정처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5. 12. 1.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소	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 내용
신라보존과학 연구소	정인환	보존과학업 (04-16-0019)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45, A동 201호	현장 배치 확인받지 않음	영업정지 0.5개월 (2025.12.1. ~ 2025.12.15.)

2. 근거법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18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따라 경상북도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 제공일자 : 2025. 11. 26.

○ 제공받는 기관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제공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건수사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법인별 토지 소유 현황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28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와 근거 법령 불일치 사무 건명, 조문·조항, 부서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편익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무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위임 사무 신설
 - 이륜자동차 검사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무 신설·정비
 -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력에 관한 사항
 -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및 제32조제1항제3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따라 위임 사무 정비 및 신설
 - 기부채납
 -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 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 관리의 위탁
 - 청문
 -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무 건명, 조문, 조항 등 정비(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무 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
 -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학력확인서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거주지 보호대상 → 거주지보호대상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위임 사무 건별 근거 법령 및 예규 정비(7건)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및 제32조제1항제3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따라 사무 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관리·처분 → 관리·처분
 - 농업기반시설용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 사용허가 및 승인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 → 사용료의 면제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

사용허가의 갱신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관한 제재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불법시설물의 철거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 과오납금의 반환
- 위임 사무 건별 근거 법령 정비(5건)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 삭제
-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다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라. 별표2의 제목 및 부서 명칭 변경 사항 정비

- 제2조제2항 중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을 “직속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 별표 2의 제목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을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변경
- 대응예방과 → 예방안전과

3. 규칙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 화 : 054-880-2125, Fax 054-880-2149, 이메일 : kimny0660@korea.kr

의견제출서

규 칙 명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 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행정 지원과	<p>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군 단위 이하 출력 자료에 관한 승인권</p> <p>2.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 음 권한</p> <p>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학 력확인서와 교육지원대상자증명 서 발급에 관한 사항</p> <p>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 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p> <p>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 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 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p> <p>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p> <p>마. 지역 내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 ·후원 추진</p> <p>바. 기타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 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사항</p> <p>사.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 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p>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북한이탈주민 거 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p> <p>같은 예규 제4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기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다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라목</p> <p>같은 예규 제4조제1항제7호</p> <p>같은 예규 제4조제1항제8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나목</p>	시장·군수
민생 경제과	<p>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 신청 관련 사무</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p>가.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p> <p>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p> <p>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p>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제2호가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12조제2항제2호나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2항제2호다목</p>	시장·군수
교 통 정 책 과	<p>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시의버스는 제외한다)</p> <p>가. 사업면허 또는 등록</p> <p>나. 수송 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p> <p>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및 인가(운임·요금기준 및 요율은 제외한다)</p> <p>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 수리</p> <p>마.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 및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제한</p> <p>바. 사업관리위탁 신고 수리</p> <p>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인가, 양도·양수제한, 법인합병 신고 수리</p> <p>아. 상속 신고수리</p> <p>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p> <p>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9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p>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과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업무(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p> <p>타. 사업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p> <p>파. 청문</p> <p>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p> <p>거. 과태료 부과·징수</p> <p>2.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자동차의 검사(다만, 법 제4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5조제2항의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p> <p>나.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p> <p>다.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p> <p>라.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p> <p>마.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의 지정</p>	<p>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86조</p> <p>같은 법 제88조</p> <p>같은 법 제94조</p> <p>「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p> <p>같은 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p> <p>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2)</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3)	시장·군수
	사.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3.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증	같은 법 제47조제1항	
	4.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의 지정(수리 및 사용검정으로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5항	
	5.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같은 법 제69조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7.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같은 법 제3조제3항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 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같은 법 제3조제12항	
	마.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같은 법 제3조제11항	
바.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같은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자. 상속의 신고	같은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군수
	차.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같은 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제1항	
	타.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 청문	같은 법 제22조	
	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	
	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27조	
	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버. 개선명령	같은 법 제31조	
	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같은 법 제32조제1항	
	어. 통지의 수령	같은 법 제38조제2항	
저.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2조제1항		
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시·군 관계공무원 및 자동차안 전단속원에 한함)	같은 법 제12조의2	시장·군수	
	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구 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가.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제2항		
	나.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		
	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 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마.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같은 법 제61조제2항		
	사.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2조제1호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사무			
	가.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 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접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4조 제5항		
	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1.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p>나.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p> <p>다. 청문</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2. 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p> <p>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처리 및 휴업·폐업 신고의 처리</p> <p>다.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업무 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처분 현황의 기록·관리</p> <p>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직무정지명령,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p>	<p>같은 법 제18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3조제3항</p> <p>「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p> <p>「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의2)</p> <p>「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4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의3)</p> <p>「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5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의4)</p>	시장·군수
문 화 산 업 과	<p>도서정가제와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p>	시장·군수
문 화 유 산 과	<p>1. 국가유산 관람료 징수</p> <p>2. 국가유산영향진단에 관한 사무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한한다.)</p>	<p>「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p> <p>「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유산과	<p>가.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p> <p>나.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력에 관한 사항</p> <p>다.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p> <p>라.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3.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공고</p>	<p>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p> <p>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p>	시장·군수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시장·군수
스마트농업혁신과	<p>1. 양곡의 소유자, 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 수입,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공무원의 증표 발행</p> <p>2.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관리·처분</p> <p>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p> <p>다. 기부채납</p> <p>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 개서 (名義改書) ,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p> <p>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 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p>	<p>「양곡관리법」 제27조</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32조제1항제3호</p> <p>「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6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스 마 트 농 업 혁 신 과	바.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시장·군수
	사.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아.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같은 법 제32조	
	자. 사용료의 면제	같은 법 제34조	
	차. 사용허가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제2항	
	카.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타. 청문	같은 법 제37조	
	파.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거.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	
	너.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 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같은 법 제 72조 및 제73조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같은 법 제74조	
	러. 과오납금의 철거	같은 법 제75조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보수, 준설(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은 제외 한다), 개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같은 법 제8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스 마 트 농 업 혁 신 과	<p>다.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p> <p>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p>	<p>같은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p> <p>같은 법 제14조제2항</p>	시장·군수
기후환경 정 책 과	<p>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p> <p>2.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p> <p>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p> <p>4.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통지 등</p> <p>5.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신청 처리</p> <p>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p> <p>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p> <p>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p>	<p>「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p> <p>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p> <p>「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p> <p>같은 법 제62조</p> <p>같은 법 제62조의3</p> <p>같은 법 제62조의4</p>	시장·군수
환 경 관 리 과	<p>1.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 사항(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 및 그 사업장과 함께 폐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한다)</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장·군수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다.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시의 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제3항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점검 및 오염도 검사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마.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38조의4	
	사. 배출시설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9조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같은 법 제40조	
	자.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감면 조정 및 징수유예	같은 법 제41조	
	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폐쇄 또는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42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44조	
	파.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	같은 법 제45조	
	하. 보고 및 검사, 오염도 검사 의뢰	같은 법 제68조	
	거. 위임권한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72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기간 연장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러.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 리 과	<p>머. 기준이내배출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조정</p> <p>버. 배출시설의 인정</p> <p>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p> <p>가.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p> <p>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다음의 권한(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 및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기,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한다)</p> <p>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p> <p>나. 영업정지명령</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4.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5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 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설치 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시장·군수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p>	<p>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p> <p>「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3조제3항</p> <p>「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p> <p>같은 법 제43조제1항</p> <p>같은 법 제49조</p> <p>「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p> <p>「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p> <p>같은 법 제31조제2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나.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같은 법 제31조제3항	시장·군수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	같은 법 제31조제7항	
	마.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같은 법 제31조제10항	
	바. 사후관리(폐쇄 등)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등	같은 법 제50조	
	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1조	
	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같은 법 제52조	
	자.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 제한 등	같은 법 제54조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카.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 시설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파.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명세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하.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거.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너.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물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p>더. 사후관리 불이행자에 대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p>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시장·군수
	<p>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시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p>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p>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서의 수리</p>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p>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 결정서의 교부</p>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p>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 계획서 접수</p>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p>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금의 납부 통보</p>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p>저.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서의 수리</p>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p>처.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에 대한 토지용도, 용도 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p>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p>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임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p>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p>나. 보고서의 제출 명령</p>	같은 법 제38조제3항		
<p>7.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른 의무사용 계획서 접수 및 내용 통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및 제2호		
<p>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맑은 물 정 책 과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및 공고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제품 등의 수거 등 권고 나. 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의 결과보고 다.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그 사실 공표 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수거 등 명령 및 그 사실 공표 마. 수거 등 명령 조치한 경우의 결과 보고 바. 수거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품등의 수거 등 실시 및 그 비용 징수 3.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변경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4.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수도법」 제7조 같은 법 제14조의5 같은 법 제14조의5 같은 법 제14조의5 같은 법 제14조의6 같은 법 제14조의6 같은 법 제14조의6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7항·제8항 같은 법 제61조제2항	시장·군수
수 자 원 관 리 과	1. 국가하천에 있어서 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2. 국가하천에 있어서 토지점용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3. 국가하천에 있어서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하천법」 제5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4. 국가하천에 있어서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
	5. 국가하천에 있어서 죽목의 재식 및 이에 따르는 처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6. 국가하천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명령, 원상회복 면제 의무 및 부속 공작물 등의 국·공유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8조	
	7. 국가하천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69조	
	8. 국가하천에 있어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70조	
	9. 국가하천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75조	
	10. 국가하천에 있어서 보고의 수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75조	
	11. 구거(「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포함한다)의 용도 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12. 「국유재산법」에 따른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권한 사항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	
	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다.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시장·군수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같은 법 제17조	
	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자.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차. 사용료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카. 사용료 감면	같은 법 제34조	
	타.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파.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하. 청문	같은 법 제37조	
	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더. 대부	같은 법 제41조	
	러.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같은 법 제66조	
	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버.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같은 법 제73조의2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p>어.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p> <p>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p> <p>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p>	같은 법 제74조	시장·군수
도 시 계 획 과	<p>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체비지 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는 명령</p> <p>2.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 등</p> <p>3.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p> <p>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장과의 협의</p> <p>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 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의 교부·재교부</p> <p>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p>	<p>「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54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1조제1항</p> <p>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나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의3다목 및 제4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의2</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시장·군수
	사. 시정명령·지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2	
	카. 청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의2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6.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권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다.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바.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 승인 사.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사용허가 등 차. 청문 카.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타.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 파. 대부 하.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거.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너.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러.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머.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 양도·무상귀속 협의 버.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및 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4조	시장·군수
도 로 철 도 과	1.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가. 도로의 사용·수익허가 나. 도로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제3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 철도과	2. 도로의 용도폐지 3. 일반국도와 관련한 접도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4. 위임국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국도유지업무 나. 국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 조치 다. 국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마.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 바. 국도에 따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 연결 허가 사. 도로점용허가 아. 도로점용공사 시행 자. 점용료 부과·징수 차. 부담금 등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급 반환 카. 변상금 징수 타. 원상회복확인 파. 비상재해시의 토지 사용 등 하.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 거.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도로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89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p>나.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p> <p>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p> <p>러.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p> <p>머. 공익을 위한 처분</p> <p>버. 수수료 징수</p> <p>서. 위임국도권리, 의무승계 등</p> <p>어. 과태료 부과·징수</p>	<p>같은 법 제90조</p> <p>같은 법 제91조</p> <p>같은 법 제96조</p> <p>같은 법 제97조</p> <p>같은 법 제103조</p> <p>같은 법 제106조</p> <p>같은 법 제117조</p>	시장·군수
에 너 지 정 책 과	<p>1.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p> <p>2.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p> <p>3.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 부분 접수</p> <p>4.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5. 「광업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6. 「광업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p>	<p>「광업법」 제45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84조</p> <p>같은 법 제104조</p> <p>같은 법 제104조제2항제2호</p> <p>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2호</p>	시장·군수
미 래 에 너 지 수 소 과	<p>1.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p> <p>가. 법 제7조제2항제9호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미 래 에 너 지 수 소 과	<p>나.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2. 발전시설 용량이 1,500KW 이하 발전사업(송·배전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전기사업의 허가</p> <p>나.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p> <p>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p> <p>라.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p> <p>마. 청문</p> <p>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사.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신고</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p> <p>「전기사업법」 제7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항</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61조제3항</p> <p>같은 법 제61조제4항</p> <p>같은 법 제108조</p>	시장·군수
해 양 수 산 과	<p>1. 근해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동해구의 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에 한하여, 동일한 어선에 위 어업과 중복하여 허가된 어업이 있는 경우 그 어선에 중복 허가된 당해 어업)</p> <p>가. 동 근해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p> <p>나. 동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p>	<p>「수산업법」 제41조·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84조</p> <p>「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해양수산과	<p>2.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는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로 한정한다)</p> <p>3. 법 제78조에 따른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로 한정한다)</p> <p>4. 법 제61조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p> <p>5.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p> <p>6.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한정한다)</p>	<p>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3호</p> <p>같은 법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63조</p> <p>같은 법 제70조제2항, 제74조 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p>	시장·군수
독도해양정책과	<p>1. 연안항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연안항만 대장의 작성 비치</p>	「항만법」제22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독도해양 정 책 과	나. 동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 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	시장·군수
	다. 연안항에 관한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 및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같은 법 제43조	
	라.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82조	
	마.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83조	
	바.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84조	
	사. 필요시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5조	
	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허가	같은 법 제87조	
	자.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	같은 법 제88조 및 제89조	
	차. 공용부담,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93조	
	카.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105조	

【별표 2】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안 전 과	1.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 가. 방염성능의 검사중 합판 및 목재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소방서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행정 지원과	1. (생략) 2. (생략) 가.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나.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생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생략)	행정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및 학력확인서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삭제〉 같은 예규 제4조제1항 제1호 〈삭제〉 〈삭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제2호가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행 정 지원 과	<p>다.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p> <p>라. 직업훈련, 직업 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p> <p>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거주 보호대상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p> <p>바. (생략)</p> <p>사. (생략)</p> <p>아. (생략)</p> <p>자. 기타 무연고 사망 북한 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p> <p>(신설)</p>			행 정 지원 과	<p>다. (현행 바와 같음)</p> <p>라. (현행 사와 같음)</p> <p>마. (현행 아와 같음)</p> <p>바. 기타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p> <p>사.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제2호다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제2호라목</p> <p>같은 예규 제4조제1항제7호</p> <p>같은 예규 제4조제1항제8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제2호나목</p>	(현행과 같음)
	<p>교 통 정 책 과</p> <p>1. ~ 11. (생략)</p> <p>(신설)</p>	(생략)	(생략)		<p>교 통 정 책 과</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51</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신설>				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나. 이륜자동차 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 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처리 및 휴업·폐업 신고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의2)	
	<신설>				다. 이륜자동차 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 취소 또는 정지처분 현황의 기록·관리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4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의3)	
	<신설>				라. 이륜자동차 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직무정지명령,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5 제2항,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의4)	
문화유산과	1. (생략)	(생략)	(생략)	문화유산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매장유산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2. 국가유산영향진단에 관한 사무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제1항제3호 및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p>가.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p> <p>나.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다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신설></p> <p><신설></p>	<p>「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9조제1항</p> <p><신설></p> <p><신설></p>	(생략)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사업면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한한다.)</p> <p>가.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p> <p>나.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에 관한 사항</p> <p>다.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p> <p>라.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p>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p><신설></p> <p><신설></p> <p><신설></p> <p>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같은 법 제22조</p>			3. (현행 2의 다와 같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스마트 농업 혁신과	<p>1. (생략)</p> <p>2. 「국유재산법」에 따른 다음 사항</p> <p>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처분</p> <p>나. 농업기반시설용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p> <p><신설></p> <p>다. 농업기반시설용</p>	<p>(생략)</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제1항제3호</p> <p>「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12조</p> <p><신설></p> <p>같은 법 제14조</p>	(생략)	스마트 농업 혁신과	<p>1. (현행과 같음)</p> <p>2.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관리·처분</p> <p>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p> <p>다. 기부채납</p>	<p>(현행과 같음)</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제1항제3호</p> <p>「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라.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같은 법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마.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조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마.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					
	라.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같은 법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라.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	같은 법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신설>					
	바.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 등의 관리 소홀에 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바.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p>사.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p> <p><신설></p>	같은 법 제40조			<p>사. 사용허가 및 승인</p>	같은 법 제30조	
	<p>아.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p>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p>아.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 보증조치</p>	같은 법 제32조	
	<p>자.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p>	같은 법 제74조			<p>자. 사용료의 면제</p>	같은 법 제34조	
	<p>차.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p>	같은 법 제75조			<p>차. 사용허가의 갱신</p>	같은 법 제35조제2항	
					<p>카.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p>	같은 법 제36조	
					<p>타. 청문</p>	같은 법 제37조	
					<p>파.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p>	같은 법 제39조	
					<p>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p>	같은 법 제40조	
					<p>거.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p>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	
					<p>너.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p>	같은 법 제 72조 및 제73조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3. (생략)	(생략)	(생략)		수와 법 제73 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 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 한 협의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러. 과오납금의 반환 3.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74 조 같은 법 제75 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별표2]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대 응 예 방 과	1. (생략)	(생략)	(생략)	예 방 안 전 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발취

[별표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실태조사 등)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 지원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 1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취업 알선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 삭제 <2021. 10. 19.>

□ 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6. 삭제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1. 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4. 법 제16조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 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5. 2. 13.>
2. 삭제 <2025. 2. 13.>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령"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 및 폐기하고, 근거 법령 불일치 사무 건명, 조문,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음.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노영 (054-880-2125)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정책기획관-15115(2025.11.19.)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야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차순애
 인강 2025. 11. 26.
 접수 2025. 11. 26.
 시행 예산담당관-14837 (2025. 11. 26.) 접수 정책기획관-15374 (2025. 11. 26.)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흥천면 도청대로 456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90-2153 팩스번호 054-89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상북도 공고 제2025-2330호

경상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출안건 】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1228
-----------	------

제출일자 : 2025. 11.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편익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아래 위임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신설
 -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를 해당 시군에 위임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 대구도시철도1호선 연장사업 등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9조, 제1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의 용지보상 사무를 해당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 사업 추진
 -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라 위반업체의 신속한 행정처분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위하여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
 - 전기공사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 전기공사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
 - 전기공사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
 - 전기공사사업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11.28일,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시군에 위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의 가입
 - 과태료의 부과 징수

나.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 정비(안 별표 3)

- 대응예방과 → 예방안전과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제혁신추진단-2062(2025.10.24.)호

나. 법제심사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실-15106(2025.10.21.)호

라. 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 여성가족과-10803(2025.10.23.)호

마. 입법예고

1)예고기간 : 2025. 10. 27. ~ 11. 16.(경상북도 공고 제2025-2109호)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예산담당관-13491(2025.10.23.)호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 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회 계 관 리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군수
기 업 지 원 과 에 너 지 정 책 과 공 통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과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과거의 명령 수거·과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군수
민 생 경 제 과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다.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및 제2조의7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2항	시장·군수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12조제7항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등 의견청취 및 다른 시·도지사 등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16조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같은 법 제18조의8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공급실적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	같은 법 46조의2제1항		
	마. 조합 해산 신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같은 법 제81조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같은 법 제82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p>아. 청문</p> <p>자. 과태료 부과·징수</p> <p>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의무자의 지정</p> <p>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라.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p> <p>4.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협동조합 설립신고</p> <p>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p> <p>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p> <p>라. 협동조합 해산신고</p> <p>마. 협동조합의 감독</p> <p>바.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p> <p>사. 신고확인증 발급</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88조제4항</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p> <p>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p> <p>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p> <p>같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56조</p> <p>같은 법 제57조</p> <p>같은 법 제70조의2</p> <p>같은 법 제119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시장·군수
교 통 정 책 과	<p>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p> <p>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p> <p>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p> <p>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p> <p>「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0조</p>	<p>시장·군수 (SOFA자동 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p>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1조	시장·군수 (SOFA자동 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8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 통 정 책 과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시장·군수 (SOFA자동 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25.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6.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제2조	
	27.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7조	
	28.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시행규칙 제8조	
	29.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88조제5항	
	32.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같은 법 제83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3.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	
	34.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	
	35.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나.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카.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36.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37.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8.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39.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	
	40.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 정책과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9조	시장·군수 (SOFA자동 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상속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1.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85조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84조	시장·군수 (SOFA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사. 차령연장	같은 법 제85조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6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8조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94조	
	카.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42.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3.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같은 법 제60조제1항	
	44.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4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제7호	
	46.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47.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48.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관련 보고·검사	같은 법 제61조제1항	
	49.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교통안전법」 제54조제1항	
	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40조의5	
	5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범죄경력 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 통 정 책 과	53.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사시행인가, 변경인가, 고시 및 관계기관 협의 나.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13조제2항	
외 교 통 상 과	1.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시장·군수
산 업 입 지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0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 업 입 지 과	<p>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카. 법 제13조의4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p> <p>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요 유치 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p>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p> <p>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p> <p>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p> <p>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16조</p> <p>「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p>	<p>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p>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업 입 지 과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시장·군수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3.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 영일만2)	「지방자치법」 제198조		시장·군수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같은 법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같은 법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같은 법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같은 법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업 입 지 과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 감독 2.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3.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행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시장·군수 시장·군수
농 업 대전환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 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농 식 품 유 통 과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2. 시료 수거 등 3.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과태료 부과·징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시장·군수
스 마 트 농 업 혁 신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 책 과	<p>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p> <p>9.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p> <p>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p> <p>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p> <p>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p> <p>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p> <p>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p> <p>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p> <p>아. 부당이득금의 징수</p> <p>자. 금지행위의 단속</p> <p>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p> <p>카. 자연자원의 조사</p> <p>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p> <p>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p> <p>하. 대집행</p> <p>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p> <p>너. 허가에 관한 협의</p> <p>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p>	<p>같은 법 제15조제1항</p> <p>「자연공원법」제3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71조</p> <p>같은 법 제72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 책 과	러.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3	시장·군수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10.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업무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2항	
	12. 동물원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수족관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가. 동물원의 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동물원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0조	
	다. 동물원의 휴·폐원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	
	라. 동물원 안전관리	같은 법 제16조	
	마. 동물원 운영·관리 기록 제출 요구	같은 법 제21조	
	바. 동물원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22조	
	사. 동물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3조	
	아. 동물원 허가 취소, 영업정지 관련 청문	같은 법 제27조	
자.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조, 제32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 정 책 과	13.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 사용과 관련한 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제49조제4항	시장·군수
환 경 관 리 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10.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라. 청문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다음 사항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중요사항 변경을 포함 한다)의 제출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 처리 등 4)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45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5)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같은 법 제25조제4항	시장·군수
	6)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부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7) 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8)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0조	
	9)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취소(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항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59조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시장·군수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접수·수리, 권리자에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같은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항·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같은 법 제40조제8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양수·인수·합병 등 경우 허가, 관계기관 협조 등	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및 제66조, 별표 17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의3제2호라목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및 39조의3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p>히. 사후관리아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p> <p>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p> <p>니.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반입재개 신청 접수 및 통보</p> <p>디. 과태료 부과·징수</p> <p>12.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p> <p>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p> <p>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p> <p>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p> <p>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p> <p>바. 과징금의 처분 등</p> <p>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p> <p>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p> <p>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p> <p>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p> <p>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p> <p>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p> <p>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p> <p>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p> <p>같은 법 제47조의2</p> <p>같은 법 제66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p> <p>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p> <p>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p> <p>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p> <p>같은 법 제30조제3항</p> <p>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관리과	<p>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p> <p>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p> <p>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p> <p>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p> <p>러. 청문</p> <p>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인정</p> <p>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p> <p>서. 과태료 부과·징수</p> <p>13. 고품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p> <p>가. 고품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p> <p>나. 고품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품연료 제품 사용허가</p> <p>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p>	<p>같은 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p> <p>같은 법 제41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p> <p>같은 법 제43조·제45조</p> <p>같은 법 제45조·제46조</p> <p>같은 법 제5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p> <p>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p> <p>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제20조의11</p>	시장·군수
맑은물정책과	<p>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p> <p>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p> <p>3.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p>	<p>「하수도법」 제11조제3항</p> <p>같은 법 제25조</p> <p>「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맑은 물 정 책 과	4.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5.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6.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68조제1항 같은 법 제82조제2항	시장·군수
수 자 원 관 리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를 포함한다) 취입보, 하천 복개는 제외한다) 및 고시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및 감면 1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시장·군수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관한	같은 법 제72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같은 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같은 법 제75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46조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같은 법 제47조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8조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91조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한정한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변경계획 수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자원관리과	<p>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상청구</p> <p>나. 보상대상자의 결정</p> <p>다. 보상금액의 산정</p> <p>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p> <p>27.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p> <p>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p> <p>다.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p> <p>라.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p>	<p>「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p>	시장·군수
산림정책과	<p>1. 산림기술 진흥 등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p> <p>가. 산림기술자 배치</p> <p>나. 과태료 부과·징수</p> <p>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직원의 배치</p> <p>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p> <p>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p>	<p>「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33조</p> <p>「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정책과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시장·군수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같은 법 제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같은 법 제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같은 법 제13조의6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9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 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복구 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림정책과	<p>사. 복구의 대집행 등</p> <p>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p> <p>자. 복구비의 반환 징수</p> <p>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p> <p>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p> <p>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p> <p>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p> <p>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p> <p>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시장·군수
산림레저관광과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3조	시장·군수
산림소득과	<p>1.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p> <p>가.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 취소</p> <p>나. 독립가(자영독립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p> <p>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p>	시장·군수
아동보육가족양육의료공익사회복지서비스보장보통	<p>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p> <p>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p> <p>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p> <p>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p> <p>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p>	<p>「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p> <p>같은 법 제24조 및 제52조제1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 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2.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3.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4.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5.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6.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7.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8.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9.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0.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1. 몰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p>「의료법」제59조제1항</p> <p>「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p> <p>같은 법 제6조제2항</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53조</p>	시장·군수
도시 계획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정한다)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한다)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타. 사방설비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더. 사회복지시설 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버. 광장(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으로 한정한다) 서. 하천(「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으로 한다) 어. 공공공지 저. 전기공급설비 처. 장사시설 커. 저수지 터. 가스공급설비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7.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같은 법 제98조	시장·군수
	8.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9.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0.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	
	11.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12.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1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4.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5.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6.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17.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18.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19.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20.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21.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2.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3.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5.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p>26.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p> <p>27.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p> <p>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한다)</p> <p>2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p> <p>3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p> <p>3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시장 군수 시행사업을 제외한다) 및 변경인가</p> <p>3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보고 공고</p> <p>3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p> <p>34. 감독 및 감사 등</p> <p>35.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330만㎡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p> <p>36.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공공기관 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p> <p>37.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p> <p>38.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는 제외한다)</p> <p>39.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p> <p>같은 법 제17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p> <p>「도시개발법」(법률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47조 및 제55조</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76조의2</p> <p>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p> <p>「택지개발촉진법」 제9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3조제1항</p> <p>같은 법 제24조</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한다) 2. 권한의 위임·위탁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4. 공익을 위한 처분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2. 건설기계 등록 등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4. 등록의 말소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사용, 수익허가 	<p>「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p> <p>같은 법 제96조</p> <p>같은 법 제97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100조</p> <p>같은 법 제83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같은 법 제5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7조</p> <p>「도로법」 제81조</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다. 협의 라. 계약의 체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 「부동산등기법」제27조 및 제28조	시장·군수
	18. 미불용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건설기계관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같은 법 제17조	
	21.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23.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2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44조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도로법」제51조 및 제52조	
	27. 원인자 부담금	같은 법 제91조	
	28.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로 철 도 과	29.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94조	시장·군수
	30.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31.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33. 건설기계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34.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나.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46조	
건 축 디자인과	35. 도 시행 도시철도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가.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도시철도법」 제9조	
	나.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같은 법 제10조	
	다.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	
	1.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주택법」 제43조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같은 법 제16조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권한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 디자인과	가.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나.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명령 대집행 4.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공시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12조의9	시장·군수
토지 정보과	1.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도로명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한정한다) 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다. 고지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시장·군수
에너지 정책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시장·군수
미래 에너지 수소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4.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공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전기사업법」 제7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전기공사법」 제9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미 래 에 너 지 수 소 과	<p>나.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p> <p>다.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라.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p> <p>마.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5.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p> <p>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의 가입</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8조</p> <p>같은법 제29조</p> <p>같은법 제30조제2호</p> <p>같은법 제46조</p> <p>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p> <p>같은 법 제21조의3</p> <p>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2항제3의2호</p>	시장·군수
해 양 수 산 과	<p>1.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p> <p>2. 연안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p> <p>가. 연안어업의 허가</p> <p>나.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p> <p>다.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연안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p> <p>라. 어업허가의 취소(연안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p> <p>마. 청문의 실시</p>	<p>「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p> <p>「수산업법」</p> <p>같은 법 제40조제2항</p> <p>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p> <p>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p> <p>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p> <p>같은 법 제103조제2호</p>	시장·군수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 재 복 지 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 내 전보권(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권 (과장급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 기술원장
	3. 연구사의 원내 전보권(본원과 지원 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건환경 연구원장
소 방 행 정 과	소방학교·소방서·119특수대응단·119산불 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 무원에 대한 호봉확정 및 승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7조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119특수대 응단장, 119산불특 수대응단
예 방 안 전 과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다. 지위승계신고 수리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같은 법 제16조제3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소방서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수 자 원 관 리 과	1 ~ 2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생략) <신설>	(생략)	수 자 원 관 리 과	1 ~ 26 (현행과 같음) 27.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다.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라.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 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현행 과 같음)
도 로 철 도 과	1. ~ 33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신설>	(생략)	도 로 철 도 과	1. ~ 33 (현행과 같음) 34.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나.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현행과 같음)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제46조	(현행 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협의</p> <p>35. 도 시행 도시철도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p> <p>나. 도에서 시행하는 철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p> <p>다. 권리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p>	<p>「도시철도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99조</p>	
미 래 에 너 지 수 소 과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생략)	미 래 에 너 지 수 소 과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전기공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전기공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p> <p>나. 전기공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시</p> <p>다. 전기공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라. 이해관계인의 공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조치요구사항 처리</p> <p>마. 전기공업</p>	<p>(현행과 같음)</p> <p>「전기공업법」 제9조제2항</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8조</p> <p>같은법 제29조</p> <p>같은법</p>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신설>	<신설>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제30조제2호	
	<신설>	<신설>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46조	
	<신설>				5.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설>	<신설>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전기안전관리 법」 제21조의2	
	<신설>	<신설>			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의 가입	같은 법 제21조의3	
	<신설>	<신설>			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 의2호 및 제2항제3의2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대응 예방과	1. ~ 2. (생략)	(생략)	(생략)	예방 안전과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관련법령발취

[별표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사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사설을 할 것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 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도시철도건설자(「도시철도법」제2조제7호)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 제2항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2.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4의2.제14조 제1항본문 또는같은 조 제2항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제31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 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 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및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 1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노영(054-880-2125)

“잇츠 타임 투 경북, 2025 경북방문의 해”



경 상 북 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정책기획관-13668(2025.10.20.)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훈령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야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5. 10. 23.
협조자 차순애

시행 예산담당관-13491 (2025. 10. 23.) 접수 정책기획관-13904 (2025. 10. 23.)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경북을 경험할 시간, 2025 경북방문의 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 상 북 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229
----------	------

제출일자 : 2025. 11.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출이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으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991,825,000	100.00%	15,987,645,245	100.00%	4,179,755	0.03%
일반회계	14,370,851,000	89.86%	14,368,117,245	89.87%	2,733,755	0.02%
특별회계	1,620,974,000	10.14%	1,619,528,000	10.13%	1,446,000	0.09%
기타특별회계	1,620,974,000	10.14%	1,619,528,000	10.13%	1,446,000	0.0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56,295,000	4.73%	747,194,000	4.67%	9,101,000	1.22%
치수사업특별회계	11,384,000	0.07%	10,329,000	0.06%	1,055,000	10.2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34,000	0.01%	3,741,000	0.02%	△2,507,000	△67.01%
발전소등지역자원 시설세특별회계	102,308,000	0.64%	102,128,000	0.64%	180,000	0.1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6,410,000	0.17%	41,537,000	0.26%	△15,127,000	△36.42%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5,858,000	0.04%	5,858,000	0.04%	0	0.00%
소방특별회계	717,485,000	4.49%	708,741,000	4.43%	8,744,000	1.23%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991,825,000	100.00%	15,987,645,245	100.00%	4,179,755	0.03%
100 지방세수입	3,111,000,000	19.45%	3,111,000,000	19.46%	0	0.00%
110 지방세	3,111,000,000	19.45%	3,111,000,000	19.46%	0	0.00%
200 세외수입	268,718,131	1.68%	278,136,793	1.74%	△9,418,662	△3.39%
210 경상적세외수입	46,880,033	0.29%	40,488,774	0.25%	6,391,259	15.79%
220 임시적세외수입	202,692,094	1.27%	194,063,266	1.21%	8,628,828	4.45%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8,588,351	0.12%	43,215,527	0.27%	△24,627,176	△56.99%
240 지난연도 수입	557,653	0.00%	369,226	0.00%	188,427	51.03%
300 지방교부세	2,129,335,704	13.32%	2,110,821,704	13.20%	18,514,000	0.88%
310 지방교부세	2,102,493,360	13.15%	2,083,979,360	13.03%	18,514,000	0.89%
320 지방소멸대응기 금	26,842,344	0.17%	26,842,344	0.17%	0	0.00%
500 보조금	8,902,242,072	55.67%	8,946,752,515	55.96%	△44,510,443	△0.50%
510 국고보조금등	8,902,242,072	55.67%	8,946,752,515	55.96%	△44,510,443	△0.50%
600 지방채	145,000,000	0.91%	145,000,000	0.91%	0	0.00%
610 국내차입금	145,000,000	0.91%	145,000,000	0.91%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5,529,093	8.98%	1,395,934,233	8.73%	39,594,860	2.84%
710 보전수입등	435,606,709	2.72%	442,277,295	2.77%	△6,670,586	△1.51%
720 내부거래	999,922,384	6.25%	953,656,938	5.96%	46,265,446	4.85%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991,825,000	100.00 %	15,987,645,245	100.00 %	4,179,755	0.03 %
010	일반공공행정	1,811,807,056	11.33 %	1,800,735,057	11.26 %	11,071,999	0.61 %
020	공공질서및안전	1,666,811,551	10.42 %	1,650,569,690	10.32 %	16,241,861	0.98 %
050	교육	667,406,066	4.17 %	658,022,750	4.12 %	9,383,316	1.43 %
060	문화및관광	540,518,280	3.38 %	540,710,010	3.38 %	△191,730	△0.04 %
070	환경	1,114,562,628	6.97 %	1,208,276,931	7.56 %	△93,714,303	△7.76 %
080	사회복지	5,069,850,778	31.70 %	5,053,074,751	31.61 %	16,776,027	0.33 %
090	보건	269,562,310	1.69 %	266,213,118	1.67 %	3,349,192	1.26 %
100	농림해양수산	1,900,367,846	11.88 %	1,877,467,482	11.74 %	22,900,364	1.22 %
11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669,462,649	4.19 %	625,499,178	3.91 %	43,963,471	7.03 %
120	교통및물류	528,545,364	3.31 %	522,653,935	3.27 %	5,891,429	1.13 %
140	국토및지역개발	805,399,887	5.04 %	823,845,443	5.15 %	△18,445,556	△2.24 %
150	과학기술	56,464,446	0.35 %	56,198,563	0.35 %	265,883	0.47 %
160	예비비	44,309,402	0.28 %	64,869,402	0.41 %	△20,560,000	△31.69 %
900	기타	846,756,737	5.29 %	839,508,935	5.25 %	7,247,802	0.86 %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기금명	2025년도 운용계획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남북교류협력 기금	1,277,616	1,277,616	777,616	777,616	500,000	50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1,423,813	201,423,813	216,892,791	216,892,791	△15,468,978	△15,468,978
관광진흥기금	21,024,801	21,024,801	18,452,583	18,452,583	2,572,218	2,572,218

3. 예산안 : 별첨

4.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1230
번 호	

제출일자 : 2025. 11. 28.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규칙을 하나의 법규로 통합하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예산 편성 등 예산 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
-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7조~제8조, 제10조, 제11조)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주민’에 대한 범위 확대(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및 해촉’ 등 신설(안 제10조~제15조)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18조)

-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재정 및 실무지원’ 및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제19조~제22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경제혁신추진단-1254(2025. 9. 9.)

나. 법제심사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13131(2025. 9. 8.)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9533(2025. 9. 9.)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9. 11. ~ 10. 1.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 별도 조치 없음 §예산담당관-11233(2025. 9. 4.)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도보, 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주민
2.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도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관실국의 주무과장이 수행한다.

⑤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충분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 ①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등

제19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등 예산과정과 도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기관,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 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취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조례안 제22조(포상)
 -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청회, 예산학교 운영,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포상 등으로 비용이 수반되지만, 해당 조례 개정은 주민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규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기존 시행규칙에 의거 일부 추진되고 있음을 전제하여 도비재원 추가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054-880-2157)

문서관리카드(생산용)

문서정보

제 목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전검토 요청
과제카드명	단위 지방보조금관리
	관리
관련정보	
문서요지	
문서요지 붙임	
본 문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전검토 요청
붙 임	1.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관계부서 협의).hwp 2.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관계부서 협의).hwp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hwp 4.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hwp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처리결과	이력
기안	주무관 이민영		2025.09.04 16:06:39	1.0
협조	주무관 류재하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으로, 조례안 제 21조, 제22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포상 등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2025.09.04 16:25:57	
검토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2025.09.04 18:14:47	
전결	예산담당관 차순애		2025.09.04 18:19:15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경상북도	발신명의	예산담당관
생산등록번호	예산담당관-11233		
공개여부	비공개(5호)		
비공개 사유	내부검토사항 등		
수 신	감사관, 경제혁신추진단장, 정책기획관		
(경 유)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5-2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2류 검단4호선 및 검단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50-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류 검단4호선 및 검단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경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사업

나. 명 칭 :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준용구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검단4호선 및 검단5호선 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전체 시행면적

A = 6,810m²(법면포함), B = 8.0m, L = 559.0m

- 소로2류 검단4호선

A = 4,608m²(법면포함), B = 8.0m, L = 377.0m

- 소로2류 검단5호선

A = 2,202m²(법면포함), B = 8.0m, L = 18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서명(법인명) : (주)우진 대표이사 최정임

나. 주 소 : 경주시 알천북로 339, 2층(동천동)

5. 사업기간 (변경)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합 계				48,493	6,836	4,632	2,204					
변경								6,810	6,810	4,608	2,202		
기정		검단리	1150	답	893	149	149	한귀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950				
변경	1	검단리	1150-1	답	125	125	12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2	검단리	1150-3	답	23	23	23	경주시					
기정		검단리	1155-1	답	1,329	110	110	황용환	경주시 효현동 714-1				
변경	3	검단리	1155-4	답	111	111	111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5-2	답	979	5	5	최춘식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363				
변경	4	검단리	1155-5	답	5	5	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5-3	도	3	3	3	최태수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1449				
변경	5	검단리	1155-3	도	3	3	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7-1	답	919	125	125	박용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성실로 50, 203-1108(장성동, 현진에버빌아파트)				
변경	6	검단리	1157-6	답	126	126	12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157-2	답	1,223	304	304		한귀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950			
변경	7	검단리	1157-7	답	304	304	304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7-3	도	36	36	36		최진용	경주시 성전동 176-15			
변경	8	검단리	1157-3	도	36	36	3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7-4	도	26	26	26		서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82, 103동 2301호(유천동, 대구월베아파트)			
변경	9	검단리	1157-4	도	26	26	2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7-5	도	26	26	26		서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82, 103동 2301호(유천동, 대구월베아파트)			
변경	10	검단리	1157-5	도	26	26	2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8	답	228	96	96		최복란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992			
									황종원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104번길29, 104동 103호(감만동, 감만동일스위트)			
									황재암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1135			
변경	11	검단리	1158-2	답	87	87	87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2	검단리	1158-5	답	4	4	4		경주시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158-1	도	122	94	94		서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82, 103동 2301호(유천동, 대구월배아이파크)			
변경	13	검단리	1158-3	도	74	74	74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14	검단리	1158-6	도	20	20	20		경주시				
기정		검단리	1159-2	답	1,808	429	429		서진석	부산 동구 범일동 1339			
변경	15	검단리	1159-6	답	428	428	428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59-5	도	89	89	89		서진석	부산 동구 범일동 1339			
변경	16	검단리	1159-5	도	89	89	89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63	답	1,236	92	92		황태수	대구시 북구 산격동 481-33			
변경	17	검단리	1163-1	답	92	92	92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19-2	답	1,365	605	605		김용석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검단길 235-25			
변경	18	검단리	1119-6	답	606	606	60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19-4	답	15	13	13		경주군				
변경	19	검단리	1119-7	답	13	13	13		경주시				
기정		검단리	1119-5	답	16	16	16		김용석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검단길 235-25			
변경	20	검단리	1119-5	답	16	16	1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186	답	581	123	123	황재정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6				
변경	21	검단리	1186-5	답	123	123	12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86-3	답	25	17	17	황현원	포항시 대도동 166-1 대원아파트 가동 103호				
변경	22	검단리	1186-6	답	17	17	17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88-3	답	2,104	376	376	이정희	경주시 황성동 277-6 황성현대5차 아파트 501동 1202호				
변경	23	검단리	1188-5	답	376	376	37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88-4	답	285	285	285	이정희	경주시 황성동 277-6 황성현대5차 아파트 501동 1202호				
								황재정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6				
변경	24	검단리	1188-4	답	285	285	28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89	답	255	214	214	이정희	경주시 황성동 277-6 황성현대5차 아파트 501동 1202호				
변경	25	검단리	1189-2	답	214	214	214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89-1	답	43	37	37	황재정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6				
변경	26	검단리	1189-3	답	36	36	36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190-1	답	95	67	67	금재운	부산광역시북구화명 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08-1403				
변경	27	검단리	1190-3	답	68	68	68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190-2	답	44	44	44	금재운	부산광역시북구화명 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08-1403				
변경	28	검단리	1190-2	답	44	44	44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03	천	158	7	7	황병철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5				
변경	29	검단리	1203-3	천	7	7	7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03-1	천	65	65	65	황병철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5				
변경	30	검단리	1203-1	천	65	65	6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03-2	천	237	9	9	황재정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136				
변경	31	검단리	1203-4	천	9	9	9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1	답	1,012	214	214	이상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검단길 291-51				
변경	32	검단리	1221-2	답	214	214	214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221-1	도	83	83	83	이상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검단길 291-51				
변경	33	검단리	1221-1	도	83	83	8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2	답	1,455	93	93	황병서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39, 806호(동천동, 경동하이츠타운)				
변경	34	검단리	1222-1	답	93	93	9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3	답	1,660	392	392	권순덕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277-5 에덴빌라2차 비동301호				
변경	35	검단리	1223-2	답	391	391	391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3-1	도	99	53	53	권오집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1389				
변경	36	검단리	1223-3	도	52	52	52	권오집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1389				
기정		검단리	1224-1	답	3,845	1,403	1,403	황병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검단길 333-1				
변경	37	검단리	1224-5	답	1,404	1,404	1,404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4-3	도	63	7	7	국(건설 교통부)					
변경	38	검단리	1224-6	도	7	7	7	국(건설 교통부)					
기정		검단리	1224-4	도	231	21	21	국(건설 교통부)					
변경	39	검단리	1224-7	도	21	21	21	국(건설 교통부)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229	답	562	159	159		최승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88-1			
변경	40	검단리	1229-3	답	159	159	159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9-1	도	30	30	30		권영도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1389			
변경	41	검단리	1229-1	도	30	30	30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29-2	도	23	23	23		권영도	월성군 안강읍 검단리 1389			
변경	42	검단리	1229-2	도	23	23	2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기정		검단리	1231-1	답	40	31	31		아시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영 동대로 416,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변경	43	검단리	1231-8	답	32	32	32		(주)우진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116번길 49-41, 2층 (황성동, 세잔베르체상가)	현대엔 지니어 링(주)	근저당	위탁사
기정		검단리	1500	구	1,884	68	68		국(농림 축산 식품부)				
변경	44	검단리	1500-1	구	71	71	71		국(농림 축산 식품부)				
기정		검단리	1518	도	3,537	502	295	207	국(건설 부)				
변경	45	검단리	1518-1	도	200	200	200		국(건설 부)				
	46	검단리	1518-3	도	275	275	275		국(건설 부)				
기정		검단리	1521	도	640	176	176		국(건설 부)				
변경	47	검단리	1521-3	도	7	7	7		국(건설 부)				
	48	검단리	1521-4	도	167	167	167		국(건설 부)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4호 선	5호 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기정		검단리	1530	구	653	59		59	국(농림 축산 식품부)				
변경	49	검단리	1530-2	구	60	60		60	국(농림 축산 식품부)				
기정		검단리	산132- 2	임	85	60		60	전영갑	서울 종로구 신교동 70-1 렉스빌 302호			
변경	50	검단리	산132- 4	임	63	63		63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경주시 고시 제2025-246호

경주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황성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으로 황성공원 및 황성문화공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근린공원(변경)

가)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황성공원	근린공원	황성동	577,770	-	577,770	건고제420호 (67.6.16)	

나) 황성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기 정 (㎡)				변 경 (㎡)				비고
	부지규모		건축규모		부지규모		건축규모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총 계	577,770	100.0	5,992.67	100.0	577,770	100.0	5,992.67	100.0	
공 원 시 설	174,969	30.3	5,992.67	100.0	178,880	31.0	5,992.67	100.0	변경
도로 및 광장	81,556	14.1	-	-	81,623	14.1	-	-	변경
조경시설	31,465	5.4	-	-	32,432	5.6	-	-	변경
휴양시설	4,452	0.8	-	-	6,307	1.0	-	-	변경
유희시설	2,072	0.4	-	-	2,072	0.4	-	-	
운동시설	20,362	3.5	1,860.94	31.1	21,222	3.7	1,860.94	31.1	변경
교양시설	21,032	3.6	3,145.53	52.5	21,194	3.7	3,145.53	52.5	변경
편익시설	11,282	2.0	636.2	10.6	11,282	2.0	636.2	10.6	
관리시설	2,748	0.5	350.0	5.8	2,748	0.5	350.0	5.8	
기타시설 (녹지)	402,801	69.7	-	-	398,890	69.0	-	-	변경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 종류	기정		변경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번호	시설명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77,770	577,770	5,992.67	5,992.67	10,911.85	10,911.85	
도로 및 광장	소 계				81,556	81,623	-	-	-	-	변경
	-	도로	-	도로	73,839	73,077	-	-	-	-	변경
	1	중앙광장	1	중앙광장	6,981	6,981	-	-	-	-	
	2	진입광장(1)	2	진입광장(1)	582	582	-	-	-	-	
	3	진입광장(2)	3	진입광장(2)	154	154	-	-	-	-	
			4	진입광장(3)		209		-	-	-	신규
			5	진입광장(4)		56		-	-	-	신규
			6	진입광장(5)		39		-	-	-	신규
			7	진입광장(6)		32		-	-	-	신규
			8	진입광장(7)		25		-	-	-	신규
		9	동편광장		468		-	-	-	신규	
조경 시설	소 계				31,465	32,432	-	-	-	-	변경
	4	잔디마당(1)	10	잔디마당(1)	11,301	11,301	-	-	-	-	
	5	잔디마당(2)	11	잔디마당(2)	7,074	7,074	-	-	-	-	
	6	잔디마당(3)	12	잔디마당(3)	1,942	1,942	-	-	-	-	
			13	잔디마당(4)		778		-	-	-	신규
			14	잔디마당(5)		189		-	-	-	신규
	7	수경시설	15	수경시설	2,414	2,414	-	-	-	-	
	8	사계절정원	16	사계절정원	6,871	6,871	-	-	-	-	
	9	산티아고정원	17	산티아고정원	1,863	1,863	-	-	-	-	
휴양 시설	소 계				4,452	6,307	-	-	-	-	변경
	10	데크마당	18	데크마당	3,418	3,418	-	-	-	-	
	11	쉼터(1)	19	쉼터(1)	162	162	-	-	-	-	
	12	쉼터(2)	20	쉼터(2)	39	39	-	-	-	-	
	13	포켓쉼터(1)	21	포켓쉼터(1)	128	128	-	-	-	-	
	14	포켓쉼터(2)	22	포켓쉼터(2)	192	192	-	-	-	-	
	15	포켓쉼터(3)	23	포켓쉼터(3)	134	134	-	-	-	-	
	16	포켓쉼터(4)	24	포켓쉼터(4)	127	127	-	-	-	-	
	17	포켓쉼터(5)	25	포켓쉼터(5)	127	127	-	-	-	-	
	18	포켓쉼터(6)	26	포켓쉼터(6)	60	60	-	-	-	-	
19	포켓쉼터(7)	27	포켓쉼터(7)	65	65	-	-	-	-		

시설 종류	기정		변경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번호	시설명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 시설			28	포켓쉼터(8)		102	-	-	-	-	신규
			29	시민참여숲		1,188	-	-	-	-	신규
			30	원형쉼터		355	-	-	-	-	신규
			31	복쉼터		210	-	-	-	-	신규
유희 시설	소 계				2,072	2,072	-	-	-	-	변경 없음
	20	어린이놀이터(1)	32	어린이놀이터(1)	419	419	-	-	-	-	
	21	어린이놀이터(2)	33	어린이놀이터(2)	1,653	1,653	-	-	-	-	
운동 시설	소 계				20,362	21,222	1,860.94	1,860.94	2,904.56	2,904.56	변경
	22	씨름장	34	씨름장	4,199	4,199	1,154.07	1,154.07	2,181.78	2,181.78	
	23	국궁체험장	35	국궁체험장	14,719	14,719	706.87	706.87	722.78	722.78	
	24	100m단거리 연습장	36	100m단거리 연습장	1,193	1,193	-	-	-	-	
	25	체력단련장(1)	37	체력단련장(1)	126	126	-	-	-	-	
	26	체력단련장(2)	38	체력단련장(2)	125	125	-	-	-	-	
			39	농구장		860		-	-	-	신규
교양 시설	소 계				21,032	21,194	3,145.53	3,145.53	6,671.09	6,671.09	변경
	27	방문자센터	40	방문자센터	5,318	5,318	1,282.50	1,282.50	3,253.50	3,253.50	
	28	충훈탑	41	충훈탑	2,820	2,820	-	-	-	-	
	29	김유신장군동상 및 국가계양대	42	김유신장군동상 및 국가계양대	523	523	-	-	-	-	
	30	최시형선생동상	43	최시형선생동상	787	787	-	-	-	-	
	31	청소년회관	44	청소년회관	6,167	6,167	1,485.03	1,485.03	2,997.59	2,997.59	
	32	임란의사추모비	45	임란의사추모비	426	426	-	-	-	-	
	33	박무의공비	46	박무의공비	51	51	-	-	-	-	
	34	문학비시설지	47	문학비시설지	923	923	-	-	-	-	
	35	기념비시설지	48	기념비시설지	740	740	-	-	-	-	
	36	역사비시설지	49	역사비시설지	1,118	1,118	-	-	-	-	
	37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50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470	470	-	-	-	-	
	38	6.25 및 월남전 참전 명예선양비	51	6.25 및 월남전 참전 명예선양비	104	104	-	-	-	-	
	39	아이사랑 책놀이터	52	아이사랑 책놀이터	1,585	1,585	378.00	378.00	420.00	420.00	
		53	숲속무대		162		-			신규	

시설 종류	기정		변경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번호	시설명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 시설	소 계				11,282	11,282	636.20	636.20	636.20	636.20	변경 없음
	40	주차장(1)	54	주차장(1)	3,512	3,512	-	-	-	-	
	41	주차장(2)	55	주차장(2)	4,210	4,210	-	-	-	-	
	42	주차장(3)	56	주차장(3)	1,876	1,876	-	-	-	-	
	43	주차장(4)	57	주차장(4)	156	156	-	-	-	-	
	44	화장실(1)	58	화장실(1)	107	107	35.10	35.10	35.10	35.10	
	45	화장실(2)	59	화장실(2)	208	208	35.10	35.10	35.10	35.10	
	46	화장실(3)	60	화장실(3)	1,084	1,084	500.00	500.00	500.00	500.00	
	47	화장실(4)	61	화장실(4)	129	129	66.00	66.00	66.00	66.00	
관리 시설	소 계				2,748	2,748	350.00	350.00	700.00	700.00	변경 없음
	48	육묘장	62	육묘장	1,811	1,811	350.00	350.00	700.00	700.00	
	49	시설창고	63	시설창고	937	937	-	-	-	-	
기타 시설	소 계				402,801	398,890	-	-	-	-	변경
	50	녹지	64	녹지	402,801	398,890	-	-	-	-	변경
	-	보행육교	-	보행육교	726	726	-	-	-	-	면적 제외

라) 세부시설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및 광장	-	도로	• 73,839㎡→73,077㎡ 감) 762㎡	• 기정 면적 오류 수정 및 신규도로 반영
	4	진입광장(3)	• 0㎡ → 209㎡ 증) 209㎡	• 신규 대상지의 진입을 위한 공간 신설
	5	진입광장(4)	• 0㎡ → 56㎡ 증) 56㎡	
	6	진입광장(5)	• 0㎡ → 39㎡ 증) 39㎡	
	7	진입광장(6)	• 0㎡ → 32㎡ 증) 32㎡	
	8	진입광장(7)	• 0㎡ → 25㎡ 증) 25㎡	
	9	동편광장	• 0㎡ → 468㎡ 증) 468㎡	• 그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신설
조경 시설	13	잔디마당(4)	• 0㎡ → 778㎡ 증) 778㎡	• 숲속무대와 어우어진 잔디휴식공간 신설
	14	잔디마당(5)	• 0㎡ → 189㎡ 증) 189㎡	• 기존수목을 활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마당 신설
휴양 시설	28	포켓쉼터(8)	• 0㎡ → 102㎡ 증) 102㎡	• 기존수림대에서 쉴 수 있는 쉼터 신설
	29	시민참여숲	• 0㎡ → 1,188㎡ 증) 1,188㎡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숲 조성공간 신설
	30	원형쉼터	• 0㎡ → 355㎡ 증) 355㎡	• 기존수목을 활용한 원형 쉼터 신설
	31	복쉼터	• 0㎡ → 210㎡ 증) 210㎡	• 책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신설
운동 시설	39	농구장	• 0㎡ → 860㎡ 증) 860㎡	•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농구장)공간 신설
교양 시설	53	숲속무대	• 0㎡ → 162㎡ 증) 162㎡	• 숲속에서 다양한 이벤트(공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신설
기타 시설	64	녹지	• 402,801㎡ → 398,890㎡ 감) 3,911㎡	•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마) 도로 조서

규 모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12,454	73,839				기정
합 계				12,747	73,077				변경
대 로 계				648	16,189				변경 없음
대로	3	1	25.4	648	16,189	진입로	1053-278천	453-5답	변경 없음
소 로 계				11,806	57,650				기정
소 로 계				12,099	56,888				변경
소로	1	1	10.0	127	1,295	산책로	소-1-2	중앙광장	변경 없음
소로	1	2	10.0	1,801	18,021	산책로	중앙광장	대-3-1	변경 없음
소로	1	3	10.0	100	1,061	연결로	소-3-34	소-1-2	변경 없음
소로	1	4	10.0	343	3,431	산책로	데크마당	데크마당	변경 없음
소로	1	5	10.0	98	1,011	연결로	대-3-1	소-1-2	변경 없음
소로	3	1	2.4	88	206	진입로	대-3-1	소-1-5	변경 없음
소로	3	2	6.0	135	814	진입로	402-4공	소-3-40	기정
소로	3	2	3.0	55	169	연결로	진입광장(4)	소로-3-40	변경
소로	3	3	2.0	113	230	산책로	소-1-2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4	2.0	74	154	연결로	소-1-4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5	1.7	320	672	산책로	소-3-4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6	2.0	14	32	산책로	소-1-2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7	2.5	56	176	산책로	소-3-54	소-3-42	변경 없음
소로	3	8	2.5	50	127	진입로	포켓쉉터(5)	소-3-60	변경 없음
소로	3	9	6.0	48	292	진입로	1053-44전	소-1-2	기정
소로	3	9	3.0	41	140	진입로	원화로	잔디마당(5)	변경

규 모				연장(m)	면적(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10	6.0	94	565	진입로	1053-273전	소-1-2	변경 없음
소로	3	11	3.0	28	84	연결로	소-3-10	어린이놀이터(2)	변경 없음
소로	3	12	3.0	148	487	진입로	1053-273전	어린이놀이터(2)	변경 없음
소로	3	13	3.0	66	204	연결로	어린이놀이터(2)	소-1-2	변경 없음
소로	3	14	3.0	177	544	연결로	씨름장	데크마당	변경 없음
소로	3	15	3.0	14	42	연결로	소-1-2	기념비시설지	변경 없음
소로	3	16	3.0	16	49	연결로	기념비시설지	씨름장	변경 없음
소로	3	17	3.0	78	237	연결로	소-3-18	씨름장	변경 없음
소로	3	18	6.0	321	1,971	연결로	소-1-2	충혼탑	변경 없음
소로	3	19	3.0	85	257	연결로	데크마당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20	3.0	42	129	연결로	소-3-22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21	3.0	43	134	연결로	소-3-22	충혼탑	변경 없음
소로	3	22	3.0	866	2,617	산책로	소-1-2	소-3-24	변경 없음
소로	3	23	3.0	74	230	연결로	소-3-22	충혼탑	변경 없음
소로	3	24	3.0	175	541	연결로	소-3-29	소-3-25	변경 없음
소로	3	25	3.0	82	330	연결로	국궁체험장	충혼탑	변경 없음
소로	3	26	3.0	11	34	연결로	소-3-24	문학비시설지	변경 없음
소로	3	27	3.0	29	94	산책로	소-3-28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28	3.0	140	396	산책로	소-1-2	소-3-22	변경 없음
소로	3	29	3.0	196	591	산책로	소-1-2	소-3-28	변경 없음
소로	3	30	1.5	132	199	산책로	소-3-59	소-3-60	변경 없음
소로	3	31	6.0	90	545	연결로	소-3-34	소-1-2	변경 없음

규 모				연장(m)	면적(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32	3.0	131	405	연결로	소-1-2	소-3-24	변경 없음
소로	3	33	3.0	36	118	연결로	소-3-31	소-1-2	변경 없음
소로	3	34	5.5	1,042	5,321	진입로	371-5도	소-3-31	변경 없음
소로	3	35	2.8	399	1,690	연결로	소-3-34	401-23도	변경 없음
소로	3	36	3.0	713	1,757	산책로	소-3-35	육묘장	변경 없음
소로	3	37	3.0	53	159	연결로	소-3-32	김유신장군동상 및 국기게양대	변경 없음
소로	3	38	3.0	71	213	연결로	소-1-2	김유신장군동상 및 국기게양대	변경 없음
소로	3	39	1.2	60	72	연결로	소-3-35	소-3-36	변경 없음
소로	3	40	6.0	220	1,548	진입로	1064-4구	소-1-2	기정
소로	3	40	3.0	115	350	연결로	소로-3-64	진입광장(6)	변경
소로	3	41	6.0	94	602	진입로	1053-205천	소-1-2	변경 없음
소로	3	42	3.5	491	1,730	진입로	진입광장 (1)	소-3-59	변경 없음
소로	3	43	1.5	100	150	진입로	대-3-1	소-3-46	변경 없음
소로	3	44	1.5	23	36	진입로	대-3-1	소-3-1	변경 없음
소로	3	45	1.5	33	54	연결로	소-3-44	소-3-43	변경 없음
소로	3	46	2.5	80	379	산책로	소-3-1	소-3-42	변경 없음
소로	3	47	2.0	86	172	연결로	진입광장 (1)	포켓쉼터 (6)	변경 없음
소로	3	53	3.0	41	144	연결로	소-1-2	소-3-42	변경 없음
소로	3	54	2.5	336	1,054	산책로	소-3-42	소-3-42	변경 없음
소로	3	55	2.5	42	111	진입로	포켓쉼터 (4)	소-3-54	변경 없음
소로	3	56	2.5	76	210	연결로	소-1-2	소-3-42	변경 없음
소로	3	57	2.5	76	260	산책로	소-3-42	소-3-59	변경 없음

규 모				연장(m)	면적(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58	1.5	167	251	연결로	소-3-56	소-3-57	변경 없음
소로	3	59	2.5	147	411	산책로	소-3-31	소-3-60	변경 없음
소로	3	60	3.5	297	1,246	연결로	소-3-54	진입광장(2)	변경 없음
소로	3	61	5.0	27	167	진입로	362-5과	소-3-60	변경 없음
소로	3	62	6.0	57	340	진입로	1053-177전	소-1-2	변경 없음
소로	3	63	3.0	172	516	연결로	진입광장(3)	진입광장(5)	신규
소로	3	64	3.0	271	855	연결로	소로-3-40	진입광장(6)	신규
소로	3	65	1.5	172	259	산책로	소로-3-9	포켓쉼터(8)	신규
소로	3	66	1.5	94	141	산책로	포켓쉼터(8)	진입광장(3)	신규
소로	3	67	1.5	96	144	산책로	소-3-63	원형쉼터	신규
소로	3	68	1.5	107	248	산책로	진입광장(3)	소-3-63	신규
소로	3	69	1.5	22	34	산책로	소-3-66	소-3-68	신규
소로	3	70	1.5	30	49	산책로	소-3-66	소-3-68	신규
소로	3	71	1.5	15	24	산책로	복쉼터	소-3-67	신규
소로	3	72	1.5	114	172	산책로	소-3-40	소-3-64	신규
소로	3	73	1.5	26	39	연결로	진입광장(7)	소-3-72	신규

2) 문화공원(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황성 문화공원	문화공원	황성동 962번지 일원	300,596	-	300,596	경고 제2024-206호 (24.5.16)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규모		건축규모		부지규모		건축규모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총 계	300,596	100.0	19,250.72	100.0	300,596	100.0	19,250.72	100.0	
공 원 시 설	179,989	59.9	19,250.72	100.0	179,989	59.9	19,250.72	100.0	
도로 및 광장	37,202	12.4	-	-	37,202	12.4	-	-	
조경시설	4,063	1.3	-	-	4,063	1.3	-	-	
휴양시설	177	0.1	-	-	177	0.1	-	-	
운동시설	47,782	15.9	9,149.42	47.5	47,782	15.9	9,149.42	47.5	
교양시설	67,908	22.6	9,816.3	51.0	67,908	22.6	9,816.3	51.0	
편익시설	22,857	7.6	285.0	1.5	22,857	7.6	285.0	1.5	
녹 지	120,607	40.1	-	-	120,607	40.1	-	-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시설 종류	기정		변경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번호	시설명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00,596	300,596	19,250.72	19,250.72	46,171.43	46,171.43	
도로 및 광장	소 계				37,202	37,202	-	-	-	-	
	-	-	-	도로	22,651	22,651	-	-	-	-	
	-	-	1	중앙광장	11,436	11,436	-	-	-	-	
	-	-	2	광장	3,115	3,115	-	-	-	-	
조경 시설	소 계				4,063	4,063	-	-	-	-	
	-	-	3	빛누리정원	4,063	4,063	-	-	-	-	
휴양 시설	소 계				177	177	-	-	-	-	
	-	-	4	쉼터(1)	145	145	-	-	-	-	
	-	-	5	쉼터(2)	32	32	-	-	-	-	
운동 시설	소 계				47,782	47,782	9,149.42	9,149.42	15,461.67	15,461.67	
	-	-	6	실내체육관	22,196	22,196	9,149.42	9,149.42	15,461.67	15,461.67	
	-	-	7	축구공원(F/P)	25,586	25,586	-	-	-	-	
교양 시설	소 계				67,908	67,908	9,816.3	9,816.3	30,424.76	30,424.76	
	-	-	8	복합문화도서관	30,000	30,000	3,322.0	3,322.0	9,742.9	9,742.9	
	-	-	9	문화예술회관	26,148	26,148	6,276.3	6,276.3	20,463.86	20,463.86	
	-	-	10	타임캡슐광장	1,465	1,465	-	-	-	-	
	-	-	1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4,687	4,687	218.00	218.00	218.00	218.00	
	-	-	12	자연체험시설	3,772	3,772	-	-	-	-	
	-	-	13	한중우호의숲	1,530	1,530	-	-	-	-	
	-	-	14	기상관측시설	186	186	-	-	-	-	
	-	-	15	박혁거세동상	120	120	-	-	-	-	
편익 시설	소 계				22,857	22,857	285.00	285.00	285.00	285.00	
	-	-	16	주차장(1)	12,934	12,934	-	-	-	-	
	-	-	17	주차장(2)	9,462	9,462	-	-	-	-	
	-	-	18	화장실	461	461	285.00	285.00	285.00	285.00	
기타 시설	소 계				120,607	120,607	-	-	-	-	
	-	-	19	녹지	120,607	120,607	-	-	-	-	
	-	-	-	보행육교	562	562	-	-	-	-	면적 제외

라) 도로 조서

규 모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4,239	22,651				
중 로 계				419	3,846				
중로	3	1	12.0	419	3,846	진입로	1001-6도	중앙광장	
소 로 계				3,820	18,805				
소로	1	1	10.0	422	4,161	산책로	중앙광장	중-3-1	
소로	1	2	10.0	348	3,620	산책로	문화예술회관	도로	
소로	1	3	10.0	196	1,887	연결로	도로	소-1-1	
소로	3	1	3.0	84	264	진입로	소-3-2	소-3-7	
소로	3	2	2.0	89	320	진입로	920-7도	소-3-7	
소로	3	3	3.0	224	1,101	산책로	소-3-7	중-3-1	
소로	3	4	2.0	14	37	산책로	소-3-5	소-3-3	
소로	3	5	2.0	56	125	산책로	소-3-7	소-3-7	
소로	3	6	3.5	27	97	산책로	소-3-3	한중우호숲	
소로	3	7	2.0	434	878	산책로	소-3-3	소-3-3	
소로	3	8	2.0	36	74	산책로	소-3-7	소-3-3	
소로	3	9	3.0	64	192	진입로	975-5전	빛누리정원	
소로	3	10	2.0	12	47	산책로	소-3-11	소-3-5	
소로	3	11	2.0	73	176	산책로	소-3-12	소-3-3	
소로	3	12	2.0	46	97	산책로	소-3-3	소-3-7	
소로	3	13	2.0	23	50	산책로	소-3-7	소-3-3	
소로	3	14	3.0	11	35	산책로	소-3-7	빛누리정원	
소로	3	15	2.0	16	36	산책로	소-3-18	소-3-7	
소로	3	16	3.0	18	58	산책로	소-1-1	소-3-7	

규 모				연장(m)	면적(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17	1.5	28	48	산책로	소-3-18	소-3-17	
소로	3	18	1.5	138	243	산책로	소-1-1	소-3-16	
소로	3	19	3.0	50	152	연결로	소-3-20	복합문화도서관	
소로	3	20	6.0	42	266	연결로	복합문화도서관	소-1-1	
소로	3	21	3.0	73	226	연결로	소-1-1	소-3-20	
소로	3	22	5.0	382	2,334	연결로	소-3-24	소-3-24	
소로	3	23	4.3	47	210	연결로	주차장(1)	소-3-22	
소로	3	24	1.5	17	27	연결로	소-1-1	소-3-18	
소로	3	25	1.5	46	79	산책로	소-3-33	소-1-1	
소로	3	26	2.0	95	193	산책로	소-3-33	소-1-1	
소로	3	27	2.0	17	34	연결로	중-3-1	녹지	
소로	3	28	2.0	17	34	연결로	중-3-1	녹지	
소로	3	29	2.0	17	34	연결로	중-3-1	녹지	
소로	3	30	3.0	17	58	연결로	소-3-33	중-3-1	
소로	3	31	2.0	14	28	연결로	중-3-1	소-3-33	
소로	3	32	2.0	105	216	산책로	소-3-33	소-3-33	
소로	3	33	3.0	200	603	산책로	중-3-1	소-1-1	
소로	3	34	5.5	52	278	산책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2)	
소로	3	35	1.7	32	58	산책로	소-3-34	소-3-36	
소로	3	36	1.5	72	144	산책로	문화예술회관	소-1-2	
소로	3	37	2.0	133	219	산책로	소-3-34	소-3-34	
소로	3	38	1.4	33	66	산책로	소-3-34	소-3-36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054-779-6423)

및 도시공원과(☎ 054-779-87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구미시 고시 제2025-305호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경미한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333-6번지 일원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 유원지 결정(경미한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유원지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333-6번지 일원	445,725	-	445,725	경상북도 고시 제2011-74호 (2011.2.10.)	

○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 면적 축소 · 바닥면적 (당초)8,344.26㎡→(변경)7,822.55㎡ · 연면적 (당초)19,263.99㎡→(변경)18,446.73㎡ ○ 세부토지이용계획 면적표기 정정 · 운동시설 (당초)35,944㎡→(변경)34,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 내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경미한변경) ○ 세부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표기 오류 정정

○ 조성계획 총괄(변경) 조서

시설	시설 내용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총계		445,725	-	445,725	8,344.26	19,263.99	감521.71	감817.26	7,822.55	18,446.73	
관리 시설	소계	27,850		27,850	-	-	-	-	-	-	
	도로	13,740		13,740	-	-	-	-	-	-	
	주차장2	8,862		8,862	-	-	-	-	-	-	
	주차장3	5,248		5,248	-	-	-	-	-	-	
운동 시설	소계	35,944		34,069	2,223.66	2,674.63	-	-	2,223.66	2,674.63	
	체육공원	20,890		19,015	232.20	232.20	-	-	232.20	230.20	면적표기 정정
	선산체육관	9,374		9,374	1,991.46	2,442.43	-	-	1,991.46	2,442.43	
	운동장	5,680		5,680	-	-	-	-	-	-	
유희 시설	소계	1,875		1,875	-	-	-	-	381.13	381.13	
	어린이 어드벤처	1,875		1,875	381.13	381.13	-	-	381.13	381.13	
편의 시설	소계	9,197		9,197	363.23	363.23	-	-	363.23	363.23	
	공원2	5,221		5,221	150.00	150.00	-	-	150.00	150.00	
	공원3	3,976		3,976	213.23	213.23	-	-	213.23	213.23	
휴양 시설	소계	64,299		64,299	5,376.24	15,845.00	감521.71	감817.26	4,854.53	15,027.74	
	청소년 수련관 및 지원시설	15,329		15,329	3,184.24	12,956.42	-	-	3,184.24	12,956.42	
	야영장2	9,242		9,242	170.47	180.95	-	-	170.47	180.95	
	산림레포츠 시설	3,285		3,285	808.53	808.53	증33.94	증13.02	842.47	821.55	건축면적 변경
	정원	36,443		36,443	1,213.00	1,899.10	감555.65	감830.28	657.35	1,068.82	건축면적 변경
녹지 시설	소계	308,435		308,435	-	-	-	-	-	-	
	조성녹지	16,636		16,636	-	-	-	-	-	-	
	원형녹지	291,799		291,799	-	-	-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2. 실시계획(변경) 인가 내용

사업시행지 위치	◦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8-2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구미도시계획시설(유원지) ◦ 명칭 :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
사업의 규모	◦ 면적 : 178,29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성명 : 구미시장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78,293	2,342.00	1,820.29	3,038.58	2,221.32	100	
관리시설	6,038					3.39	
편익시설	5,221	150.00	150.00	150.00	150.00	2.93	
휴양시설	48,970	2,192.00				27.47	
녹지시설	118,064					66.21	

※ 토지이용계획도 및 면적에서는 변경사항 없으나 건축면적만 변경사항 있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대상상 면적(㎡)	편입 예정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1,406,992	154,823						
1	선산읍 노상리	산4	임	81,186	36,648		구미시				
2	"	산6-1	임	142,413	58,967		구미시				
3	"	산8-2	임	1,159,835	44,550		구미시				
4	"	산11	구	8,002	8,002		농림축산 식품부				
5	"	산12	구	9,614	2,052		농림축산 식품부				
6	"	산13	도	893	496		국토교통 부				
7	"	333	전	26	26		구미시				
8	"	333-1	도	5	5		구미시				
9	"	334	전	1,197	256		구미시				
10	"	335	답	1,428	1,428		구미시				
11	"	335-1	전	370	370		구미시				
12	"	336	잡	500	500		구미시				
13	"	336-1	답	913	913		구미시				
14	"	336-3	잡	610	610		구미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m ²)	편입예정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의 종류및 내용	
15	"	337	답	317	317		구미시				
16	"	338	답	116	116		구미시				
17	"	339	답	5,170	5,170		구미시				
18	"	339-1	대	294	294		구미시				
19	"	340	답	793	793		구미시				
20	"	341	전	939	939		구미시				
21	"	342	임	370	370		산림청				
22	"	343	대	536	536		구미시				
23	"	344-1	전	3,997	3,997		구미시				
24	"	344-2	답	1,124	1,124		구미시				
25	"	349	답	5,679	5,679		구미시				
26	"	350	답	770	770		구미시				
27	"	369	천	3,365	3,365		국토교통부				

- 수용할 물건조서 : 해당없음

3. 기타 사항문의

- 산림과 산림휴양시설팀(☎054-480-5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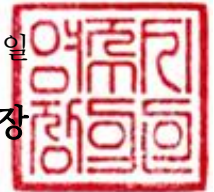
영주시 고시 제2025-200호

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것으로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사항이며, 향후 주변개발에 따른 인근 거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	15~18	국지 도로	288	중로2-2	소로1-41	일반 도로	-	2001.01.20. (영주 제23호)	
변경	중로	2	20	15~48	국지 도로	288	중로2-2	소로1-41	일반 도로	-	2001.01.20. (영주 제23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0	중로2-20	• 일부구간 폭원확폭 - B=15~18m → 15~48m, 증)30m	•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확장 및 도로개설에 따른 법면부의 시설 결정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도시과(054-639-668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고시 제2025-250호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4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

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79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 2-4호선)]
 - 나. 사업의 명칭 : 청리 청하리 상담소옆 소로(2-4) 개설공사(추가구간)
3.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공사 L = 110.0m, B = 6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04. 10.

5.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나. 성 명 : 상주시(상주시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읍	리				계	도시계획 시설	성 명	주 소	
합 계			5필지				192	192			
1	상주		청하리	791-1	답	448	57	57	박성욱	상주시 청리면 청하1길57-1	
2	“		“	791-4	답	324	114	114	공	상주시 상산로 223	
3	“		“	793-1	과	196	196	196	공	상주시 상산로 223	
4	“		“	988-1	도	11,743	17	17	국	건설부	
5	“		“	미필지			18	18			
6	“		“	767-11	답	131	131	131	공	상주시 상산로 223	
7	“		“	768-6	종	9	9	9	대한예수교 장로회청리 제일교회	청리면 원장리768-2	
8	“		“	768-7	전	132	132	132	대한예수교 장로회청리 제일교회	청리면 원장리768-2	
9	“		“	768-3	구	76	38	3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10	“		“	산46-2	구	397	83	83	이주욱 외2인		
11	“		“	산46-4	도	2,442	30	30	국	건설부	

※ 편입지번 및 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물건조서는 편입토지 상에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로 같음하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54-537-7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고시 제2025-25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⑥	초산(울품)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83,353	증) 4,147	87,500	상고 제572호 (01.11.26)	구적오차정정 : 증) 302m ² 구역계확장 : 증) 3,845m ²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변경	⑥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	87,500	- 근로자들의 위생방역·교통안전서비스 및 생계 위생방역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구역 확장코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3,353	증) 4,147	87,500	100.00	
공업용지	75,418	증) 4,140	79,558	91.0	
녹지용지	7,935	증) 7	7,942	9.0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토지이용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상주시 초산동 666-3 일원	공업용지	75,418	증) 4,140	79,558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공업용지 증가
변경		녹지용지	7,935	증) 7	7,942	공장부지 확장에 따라 녹지용지 증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초산동 666-3번지 일원	1,790	-	1,790	상주시 고시 제2012- 896호 (12.10.08)	
변경	②	녹지	완충 녹지	초산동 666-3번지 일원	2,526	감) 2	2,524		
변경	③	녹지	완충 녹지	초산동 666-3번지 일원	1,727	감) 283	1,444		
변경	④	녹지	완충 녹지	초산동 666-3번지 일원	1,350	증) 292	1,642		
기정	⑤	녹지	완충 녹지	초산동 666-3번지 일원	542	-	542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녹지	- 녹지면적 변경 A=2,526㎡→2,524㎡ (감 2㎡)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완충녹지 선형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③	녹지	- 녹지면적 변경 A=1,727㎡→1,444㎡ (감 283㎡)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완충녹지 선형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④	녹지	- 녹지면적 변경 A=1,350㎡→1,642㎡ (증 292㎡)	공장부지 확장에 따른 완충녹지 선형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⑥	A	83,353	증) 4,147	87,500	1	75,418	증) 4,140	79,558	공업용지
					2	1,790	-	1,790	녹지용지
					3	2,526	감) 2	2,524	녹지용지
					4	1,727	감) 283	1,444	녹지용지
					5	1,350	증) 292	1,642	녹지용지
					6	542	-	542	녹지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⑥	1	- 공업용지 변경 A=75,418㎡→79,558㎡ (증 4,140㎡)	-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업용지 면적 변경
	3	- 녹지용지 변경 : A=2,526㎡→2,524㎡ (감 2㎡)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용지 면적 변경
	4	- 녹지용지 변경 A=1,727㎡→1,444㎡ (감 283㎡)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용지 면적 변경
	5	- 녹지용지 변경 A=1,350㎡→1,642㎡ (증 292㎡)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 용지 면적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1	A-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단, 제10차 한국산업분류(KSIC)에 따른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분류 업 종 번호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C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비료제조업 포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40m이하 (건축물 상단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배 치	- 남향권장
		형 태	- 박공지붕, 평지붕
색 채	- 지붕 : 흰색, 파란색 - 벽채 : 흰색, 분홍색, 빨간색		

※ 통계법 제 17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표 적용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도로망 계 획	㉠	㉠	- 종사자 및 화물차량의 주 진출입로	- 상근자(통근버스) 진출로 및 화물차량의 주 진출입로	
	㉡	㉡	- 사업지 내부 가로망 체계는 기존 공장과 확장공장을 연결 · 사업지 내부 도로폭은 8m (왕복 2차로)로 계획	- 사업지 내부 가로망 체계는 기존 공장과 확장공장을 연결 · 사업지 내부 도로폭은 8m (왕복 2차로)로 계획	
	㉢	㉢	- 기존 진출입로는 상근자 및 업무용 차량, 완제품 출하용 화물차에 한하여 진출입 허용 · 생계차량 진출입 불허	- 기존 진출입로는 상근자 및 업무용 차량, 완제품 출하용 화물차에 한하여 진출입 허용 · 생계차량 진출입 불허	
	㉣	㉣	- ㉠: 부출입구는 비상시에만 차량 진출입 허용 · 비상시를 대비한 차량 비상출입구로서 평상시 차량 진출입 불허 · 생계차량 및 화물차량 진출입 불허	- ㉠: 부출입구는 비상시에만 차량 진출입 허용 · 비상시를 대비한 차량 비상출입구로서 평상시 차량 진출입 불허 · 생계차량 및 화물차량 진출입 불허	
	㉤	㉤	- ㉤: 생계차량 전용 진출입로	- ㉤: 생계차량 전용 진출입로	
	-	㉥	-	- 상근자(통근버스)에 한하여 진입 허용 · 생계차량 진출입 불허	
주차장 계 획	-	-	- 공장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법정 주차대수 및 계획주차대수 이상 확보 → 총 계획주차대수 : 190대(장애인 주차 3대 포함)	- 공장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법정 주차대수 및 계획주차대수 이상 확보 → 총 계획주차대수 : 207대(장애인 주차 4대 포함)	- 총 법정주차대수 : 144대 산정기준: 1대/525㎡
교통 안전 및 기타	㉠	-	- 주출입구 점멸등 설치 권장	주출입구 점멸등 설치 권장	
		-	내·외부도로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3개소 설치	내·외부도로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3개소 설치	
진입 도로	㉦	㉧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진입로로 활용 · 진입로설치구간 : B=8m, L=360m	- 울퉁 공장부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확장 · 진입로설치구간 : B=8m, L=360m→397m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도로 결정(변경)

(나) 조경녹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조경 계획	공장내 종사자의 건강·휴양·정서생활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지면적의 6.5%이상 조경녹지 확보 상록교목 (소나무, 잣나무), 낙엽교목 (감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상록관목 (사철나무), 낙엽관목 (백철쭉,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 등 식재	5,700	-	5,700	- 법정조경녹지면적 : 대지면적의 3%이상 확보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3	8	국지	360	초산동 666-5	초산동 786-4	일반 도로	-	상주시고시 제2018-462호 (2018.04.30.)	진입 도로
변경	소로	2	123	8	국지	397	초산동 666-5	초산동 929	일반 도로	-	상주시고시 제2018-462호 (2018.04.30.)	진입 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23	소로 2-123	소로 2-123호선 변경 :B=8m, L=360m→397m(증37m)	울품 공장부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5-15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신학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1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영남신학대학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영남신학대학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영남 신학 대학교	대학교	진량읍 봉회리 117 일원	57,100	-	57,100	경산시고시 제2005-325호 (2005.11.2)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없음)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100	-	57,100	100.0
나	운동장	진량읍 봉회리 117 일원	5,893	-	5,893	10.3
다	도로	〃	5,998	-	5,998	10.5
라	녹지	〃	14,791	-	14,791	25.9
마	주차장	〃	2,553	-	2,553	4.5
바	교육기본시설부지	〃	27,865	-	27,865	48.8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지하/ 지상)	비고
시설 번호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기본시 설부지	27,865	-	27,865	9,130.85	증) 64.27	9,195.12	25,628.05	증) 342.99	25,971.04	-	
A	본관	27,865	-	27,865	967.37	-	967.37	2,997.87	-	2,997.87	1/4	
B	대학원 동				572.42	-	572.42	1,613.13	-	1,613.13	1/3	
C	강당				943.06	증) 64.27	1,007.33	1,095.61	증) 342.99	1,438.60	1/2	
D	학생 회관				1,121.05	-	1,121.05	2,992.62	-	2,992.62	1/3	
E	교육연 구동				788.21	-	788.21	1,672.29	-	1,672.29	1/2	
F	샤론관	27,865	-	27,865	487.52	-	487.52	1,191.00	-	1,191.00	1/2	
G	도서관				1,233.00	-	1,233.00	3,913.50	-	3,913.50	1/3	
H	감람원				642.96	-	642.96	2,587.91	-	2,587.91	0/5	
I	수위실				20.48	-	20.48	20.48	-	20.48	0/1	
J	이상근 기념관				954.78	-	954.78	3,443.64	-	3,443.64	0/5	
K	본관				700.00	-	700.0	2,000.00	-	2,000.00	0/3	계획
L	선교관				700.00	-	700.0	2,100.00	-	2,100.00	0/3	계획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영남 신학 대학교	C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 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면적 : 943.06㎡ → 1,007.33㎡ (증) 64.27㎡ - 건축 연면적 : 1,095.61㎡ → 1,438.60㎡ (증) 34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당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의성군 고시 제2025-164호

의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381번지 일원 의성군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써 노연근린공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1)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노연 근린공원	근린공원	단북면 노연리 산1-2번지 일원	29,880	-	29,880	경상북도고시 제1977-337호 (1977.10.12)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1) 시설총괄표

시설 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면적 (㎡)	구성비 (%)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29,880	100.0	310	310		
소 계		21,579	72.2	310	310		
공 원 시 설	도로 및 광장	- 도로 - 산책로 - 진입광장 - 연결광장 - 상징광장	5,305	17.7	-	-	
	휴양 시설	- 휴게쉼터 4개소 - 전망쉼터 - 지압보도쉼터 - 반려동물오토캠핑장	7,251	24.3	-	-	
	유희 시설	- X-GAME 놀이장	1,310	4.4	-	-	
	운동 시설	- 풋살구장 - 테니스장 - 농구장 - 족구장	5,270	17.6	-	-	
	편의 시설	- 동경이전망대 - 주차장	1,603	5.4	-	-	
	관리 시설	- 화장실 / 창고 -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동	600	2.0	160	160	화장실 / 창고
					150	150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동 ※ 휴게시설-신설
	도시 농업 시설	- 농기구 놀이마당	240	0.8	-	-	
	녹지	- 조성녹지	8,301	27.8	-	-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29,880	310	310		
도로 및 광장	소 계			5,305	-	-		
	-	도 로			3,056	-	-	
	-	산 책 로			739	-	-	
	3	진입광장	단북면 노연리 390-4번지 일원	150	-	-		
	6	연결광장	단북면 노연리 380-1번지 일원	40	-	-		
	7	상징광장	단북면 노연리 380-2번지 일원	1,320	-	-		
휴양 시설	소 계			7,251	-	-		
	8	휴게쉼터1	단북면 노연리 380-1번지 일원	70	-	-		
	9	휴게쉼터2	단북면 노연리 380-1번지 일원	590	-	-		
	10	휴게쉼터3	단북면 노연리 380-1번지 일원	280	-	-		
	11	휴게쉼터4	단북면 노연리 391-3번지 일원	230	-	-		
	12	전망쉼터	단북면 노연리 산1-2번지 일원	110	-	-		
	13	지압보도쉼터	단북면 노연리 380-1번지 일원	280	-	-		
	26	반려동물 오토캠핑장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일원	5,691	-	-		
유희 시설	소 계			1,310	-	-		
	16	X-GAME 놀이장	단북면 노연리 388번지 일원	1,310	-	-		
운동 시설	소 계			5,270	-	-		
	17	풋살구장	단북면 노연리 387-1번지 일원	1,000	-	-		
	18	테니스장	단북면 노연리 391-3번지 일원	2,960	-	-		
	19	농구장	단북면 노연리 388번지 일원	710	-	-		
	20	족구장	단북면 노연리 380-1번지 일원	600	-	-		
편의 시설	소 계			1,603	-	-		
	23	주차장	단북면 노연리 380-2번지 일원	1,123	-	-		
	27	동경이전망대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일원	480	-	-		
관리 시설	소 계			600	310	310		
	24	화장실/창고	단북면 노연리 390-2번지 일원	260	160	160	1층	
	28	반려동물문화 센터 관리동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일원	340	150	150	1층 ※ 휴게시설 -신설	
도시 농업 시설	소 계			240	-	-		
	29	농기구놀이마 당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일원	240	-	-		
녹지	소 계			8,301	-	-		
	25	조성녹지	단북면 노연리 일원	8,301	-	-		

3)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19개		1.2~6.0	1,134	3,795	-	-	-	
기정	소로	3	1	6.0	112	672	시설연결 동선	소로3-5	상징광장	
기정	소로	3	2	5.0	220	954	시설연결 동선	상징광장	노연리 산3	
기정	소로	3	3	5.0	13	65	시설연결 동선	진입광장	상징광장	
기정	소로	3	4	5.0	40	201	시설연결 동선	소로3-2	노연리 산1-2	
기정	소로	3	5	3.0	294	882	시설연결 동선	상징광장	연결광장	
기정	소로	3	7	2.0	40	80	시설연결 동선	소로3-5	소로3-1	
기정	소로	3	8	2.0	40	80	시설연결 동선	소로3-5	소로3-1	
기정	소로	3	9	2.0	34	68	시설연결 동선	상징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10	1.5	36	54	시설연결 동선	주차장	소로3-2	
기정	산책로	-	4	2.0	29	63	산책동선	노연리 산1-2	데크쉼터	
기정	산책로	-	8	2.0	22	50	산책동선	노연리 산3	산책로9	
기정	산책로	-	9	2.0	47	94	산책동선	소로3-2	산책로4	
기정	산책로	-	10	2.0	20	40	산책동선	산책로9	전망쉼터	
기정	산책로	-	12	2.0	9	20	산책동선	전망쉼터	노연리 산1-1	
기정	산책로	-	13	2.0	48	96	산책동선	소로3-4	전망쉼터	
기정	산책로	-	14	2.0	8	24	산책동선	산책로13	노연리 산1-2	
기정	산책로	-	29	2.0	6	15	산책동선	노연리 산3	산책로31	
기정	산책로	-	30	2.0	11	22	산책동선	산책로31	반려동물 오토캠핑장	
기정	산책로	-	31	3.0	105	315	산책동선	노연리 381	노연리 385-1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안전환경국 농촌활력과(054-830-6344)에 비치
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공 고

고령군 공고 제2025-1614호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1일

고령군



1. 공람(열람)기간 : 2025. 12. 01. ~ 12. 15. (14일이상)

2. 군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당초	군계획 시설 (공원)	우곡문화공원 조성사업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	A = 25,044㎡	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변경				A = 25,064㎡	인가일로부터 ~ 2027. 12. 31.	

※ 변경사유

- 국유재산 협의 및 매수로 인한 시행기간 변경(연장)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
- 고령군 고시 제2025-698호(25. 05. 01.)에 고시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추가분 반영으로 인한 건축물 면적 변경

3.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요내용

가. 편입토지조서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시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고령군	우곡면	포리	283-3, 305-1, 305-3, 307-1, 308, 309, 310, 311, 954-9, 954-14	전, 답, 도, 임	28,165	27,095	4,974	5,012

※ 분할 측량 등으로 인한 해제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금회 공고로 갈음함.

나. 해제사유 : 군계획시설(공간시설:우곡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성명 : 고령군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 붙임과 같음

6.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비치 및 공람장소

: 고령군청 도시과,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우곡면사무소

- 의견 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내
- 의견 제출처

: 고령군청 도시과,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우곡면사무소

7.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관련 : 고령군청 도시과 (054-950-6722)
-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054-950-730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우곡면 포리	272	묘	2,630	2,630	고령군					
2	우곡면 포리	272-3	묘	327	327	고령군					
3	우곡면 포리	275-3	답	8	8	고령군					
4	우곡면 포리	276	묘	2,544	2,544	고령군					
5	우곡면 포리	276-1	묘	3,701	3,701	고령군					
6	우곡면 포리	277	전	2,519	2,519	고령군					
7	우곡면 포리	277-1	전	33	33	고령군					
8	우곡면 포리	278	전	1,212	1,212	고령군					
9	우곡면 포리	278-1	전	104	104	고령군					
10	우곡면 포리	279	전	1,646	1,646	고령군					
11	우곡면 포리	281-3	전	4	4	고령군					
12	우곡면 포리	283-3	전	31	31	고령군 외2인					
13	우곡면 포리	305-1	답	68	68	고령군					
14	우곡면 포리	305-3	답	4	4	고령군					
15	우곡면 포리	307-1	답	1,121	1,121	고령군					
16	우곡면 포리	308	답	843	843	고령군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예상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7	우곡면 포리	309	전	1,045	1,045	고령군					
18	우곡면 포리	310	임	225	225	고령군					
19	우곡면 포리	311	답	1,349	1,349	고령군					
20	우곡면 포리	367	전	1,073	1,073	고령군					
21	우곡면 포리	368	전	1,805	1,805	고령군					
22	우곡면 포리	368-1	전	727	727	고령군					
23	우곡면 포리	372	답	362	362	고령군					
24	우곡면 포리	372-2	답	933	933	고령군					
25	우곡면 포리	954-9	도	273	273	국(건설 부)					
26	우곡면 포리	954-1 1	도	427	427	국(건설 부)					
27	우곡면 포리	954-1 3	도	47	47	국(건설 부)					
28	우곡면 포리	954-1 4	도	3	3	국(건설 부)					

봉화군 공고 제2025-1377호

역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열람 공고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일원 「역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봉화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지역개발사업
- 명 칭 : 역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다. 사업예정지 (변경)

-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30-5번지 일원
- 면 적 : 16,356㎡ → 15,460㎡ (감 896㎡)

라. 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2018년 ~ 2025년
- 변 경 : 2018년 ~ 2026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참조

사. 관계도서 : 실음생략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비치)

2.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기간 : 2025. 12. 1. ~ 2025. 12. 19.(18일간)

나. 열람장소 :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다.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054-679-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주소	권리자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808	16,356	감)896	15,460						
1	춘양면 의양리	113 - 10	도	4,099	39	-	39	국토부					
2	춘양면 의양리	130 - 1	천	77	5	-	5	봉화군					
3	춘양면 의양리	130 - 2	답	1,635	1,472	-	1,472	봉화군					
-	춘양면 의양리	130 - 3	답	758	597	감)597	-	유한석	의양리 145				
4	춘양면 의양리	130 - 4	답	2,002	1,966	-	1,966	봉화군					
5	춘양면 의양리	130 - 5	답	5,527	5,258	-	5,258	봉화군					
-	춘양면 의양리	130 - 11	답	1,566	299	감)299	-	유계주	의양리 145				
6	춘양면 의양리	130 - 24	천	364	288	-	288	봉화군					
7	춘양면 의양리	130 - 29	답	189	148	-	148	봉화군					
8	춘양면 의양리	130 - 33	답	103	39	-	39	봉화군					
9	춘양면 의양리	130 - 41	천	47	29	-	29	봉화군					
10	춘양면 의양리	130 - 44	답	30	25	-	25	봉화군					
11	춘양면 의양리	259	과	4,359	4,288	-	4,288	봉화군					
12	춘양면 의양리	259 - 2	과	4	4	-	4	봉화군					
13	춘양면 의양리	260 - 2	전	1,051	383	-	383	봉화군					
14	춘양면 의양리	263 - 3	전	803	580	-	580	봉화군					
15	춘양면 의양리	263 - 6	도	147	16	-	16	봉화군					
16	춘양면 의양리	266	전	936	619	-	619	봉화군					
17	춘양면 의양리	266 - 2	전	92	70	-	70	봉화군					
18	춘양면 의양리	600 - 1	도	13,019	231	-	231	국토부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1길 9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산175-1번지 일원 면적 : 0.12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소수력발전소 전력 공급용 한전주 설치 ○ 시설개요 : 전주(16m, 콘크리트) 1본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6일부터 2030년 11월 25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78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 지보면 매창리 1171-1번지 일원 면적 : 9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풍양취수장 개량 및 비상연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토질조사(시추조사) ○ 시설개요 : 시추조사 4공(구경 76mm, 심도12m)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01월 25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8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포항시장(체육산업과)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해도동 130-1번지 외 25필지 일원 면적 : (당초) 17,935㎡ → (변경) 18,07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형산강 파크골프장 조성 ○ 변경사유 : 시설 추가 설치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공 : 천연잔디(17,228㎡), 인조잔디(707㎡) - 시설물공 : 이동식 컨테이너(3×6×3.3) 3개소, 탈부착 그물망 웬스(H=1.0m, L=247m / H=0.5m, L=387m), 훌컵 36개소, 안내판 1개소, 개수대(1.5×2.0) 1개소, 상수도관(D16mm) L=185m, 하수도관(D150mm) L=32m
점 용 기 간	2024년 02월 19일부터 2029년 02월 18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구미시장(하천과)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397번지 외 28개소 면적 : 121㎡ / (일시) 35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낙동강 하상도로 통과높이 제한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자동차단시설 설치 ○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형 통과높이 28개소 - 통과높이 안내표지 24개소 - 가로등 21개소(기 설치시설 정비) - 자동차단기 1개소 및 CCTV 1개소
점 용 기 간	2025년 11월 28일부터 2030년 11월 27일까지 (일시)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03월 27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9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영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문경시장(홍보전산과)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729-1 일원 면적 : 1m ²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목적 : 문경시 대표적 경관 및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CCTV 설치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CCTV 설치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대(H=7m), 태양광 패널(80w), 고정형 카메라, 스피커 등
점 용 기 간	당초 : 2024년 12월 02일부터 2025년 12월 01일까지 변경 : 2025년 12월 02일부터 2030년 12월 01일까지



기 타

공 고

포항남부소방서 공고 포남 제2025-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 내용]

- 상 호 : (주)안국방재(울릉지점)
- 대 표 자 : 서구식
- 영업소소재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길 7, 2층
- 업 종 : 소방시설관리업
- 등록번호(등록일): 제 포항(남부)-2025-0001호(2025. 11. 26.) 끝.

2025. 12. 1.

포항남부소방서장